

고용보험의 실업등급부 수급자격자 가이드

수급자격 결정 연월일	레이와	년	월	일	인정일 (형 - 요일)
지급번호	□□ — □□□□□□□□ — □□				형
성명					요일

◎ 당신의 고용보험 설명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설명회 일시	월	일 (요일)	시	분
-------------	---	--------	---	---

※ 고용보험 설명회에는 ○표 한 것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1 수급자격자 가이드
- 2 필기도구
- 3 지불 희망 금융기관 지정신고서 또는 예금(저금) 통장(본인 명의인 것)
- 4 사진 장(세로 3cm × 가로 2.5cm 정도의 상반신 사진)
- 5 마이넘버카드, 통지카드, 개인번호가 기재된 주민표 중 어느 하나 (*)
- 6 운전면허증, 관공서가 발행한 신분증명서 또는 자격증명서(사진 포함) 중 하나
(선원인 경우는 선원수첩)
- 7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주민표 사본, 인감증명서)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 또는 건강보험 피보험자증
- 8 기타()

(*)수급 수속에는 개인번호 확인서류(마이넘버카드 등)가 필요합니다.

◎ 당신의 최초 실업 인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실업 인정일	월	일(요일)	시	분 ~	시	분
-----------	---	-------	---	-----	---	---

※ 인정일에는 반드시 아래에 기재된 것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수급자격자증 • 실업인정신고서 • 기타 ()

고용보험 설명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연락 주십시오.

- ※ 고용보험 수급 수속을 하면 수속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은 기본수당 등의 지급 유무와 상관없이 그 후의 고용보험 수급 요건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에는 부담 없이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차장에는 한도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고용보험 Q&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URL】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39508.html>

헬로워크 (공공직업안정소) 노동국 직업안정부 직업안정과



헬로워크의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헬로워크에서는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자신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헬로워크는 후생노동성이 소관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하, 헬로워크의 주요 서비스를 소개하오니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헬로워크를 이용할 때에는 ‘고용보험수급자격자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일에 관한 상담

헬로워크의 직업상담 창구에서는 취직에 관한 다양한 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구인정보를 찾기 어려워요’, ‘관심 있는 구인정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등, 어떤 상담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창구를 방문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의 구인상황 설명과 하루빨리 재취직하기 위한 어드바이스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인정보 제공

헬로워크에는 다양한 회사로부터 매일 새로운 구인정보가 도착합니다.

구인정보는 컴퓨터를 이용해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헬로워크에서는 다른 헬로워크의 구인정보도 제공하고 있어 광범위하게 구인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회사에 소개

응모하고자 하는 구인정보가 있으면 직업상담 창구를 방문해 주십시오.

해당 구인에 대해 설명과 어드바이스를 해 드리고 질문사항을 받은 후, 회사 담당자와 면접일 등을 조정해 소개장을 드립니다.

또한 구인조건이 원하는 바와 다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회사와 조정해 드리기도 합니다.

구직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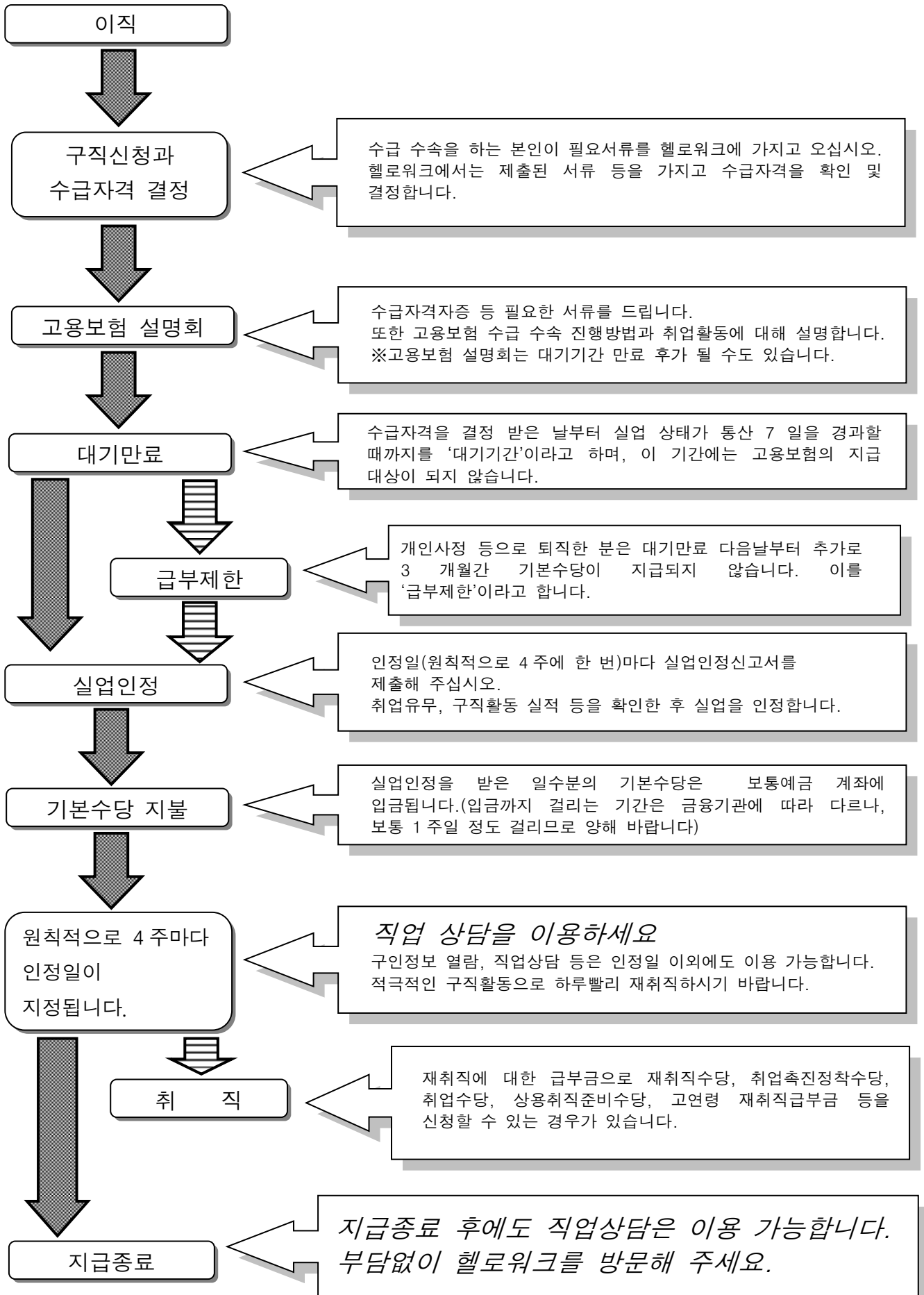
헬로워크에서는 여러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는 방법, 면접 스킬에 대한 어드바이스 등과 관련하여 각종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미나 일정은 각 헬로워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서비스

이외에도 각 헬로워크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각 헬로워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수속의 흐름



1 고용보험의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에서는 실업 중에 생활을 걱정하지 않고 구직활동에 전념하여 하루빨리 재취직할 수 있도록 ‘구직자급부’를 지급합니다.

이 구직자급부는 일을 그만두면 반드시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자급부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실업상태에 있는 분에 한합니다.

2 실업상태란?

실업상태란, 다음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적극적으로 취직하고자 할 의사가 있는 경우.
- 언제든지 취직할 수 있는 능력(건강 상태, 환경 등)이 있는 경우.
- 적극적으로 일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은 원칙적으로 구직자급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바로 취직하기 어려운 분(산재보험의 휴업[보상]급부나 건강보험의 상병수당금 등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를 포함)
2.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바로 취직할 수 없는 분
3. 친족의 간호 등으로 바로 취직할 수 없는 분
4. 정년 등으로 이직하여 당분간 휴양할 예정이신 분
5. 결혼하여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 취직을 원하지 않는 분
6. 가사 돕기, 농업, 상업 등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 취직할 수 없는 분
7. 자영업(준비 포함)을 하고 있는 분 ※수입 유무를 불문합니다.
8. 회사 등의 임원으로 취임한 분(활동과 보수가 없는 경우는 헬로워크에서 확인하십시오)
9. 취직(견습, 시용기간, 연수기간 포함. 수입 유무 불문)한 분
※주당 노동시간이 20 시간 미만인 경우는 일을 한 날과 수입액을 신고해야 하나, 그 외의 실업 중인 날에 대해서는 기본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0. 학업에 전념할 예정인 분(낮시간에 학교에 다니고 있어 바로 취직할 수 없는 경우)
11. 다음 취직이 결정되었다(고용 예약, 내정 포함)
※ 1. 2. 3. 4. 의 이유로 인해 곧바로 직업을 가질 수 없을 때는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17 페이지 참조)

보험료를 부담하였는데도 구직자급부를 수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고용보험은 적립저금처럼 보험료를 부담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여러분이 납부한 보험료 이외에 다른 노동자 분들과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와 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하는 상호부조(서로 돕기)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할 마음은 있지만 현재 질병 등으로 일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구직자급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부터 1 년간입니다. 이 기간을 ‘수급기간’이라고 합니다.

퇴직 후 질병, 임신 등의 이유로 바로 일을 할 수 없는 동안 수급기간이 지나 버리면 모처럼의 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이 수급기간을 일정 기간 연장한 후 일할 수 있게 되고 나서 고용보험의 수급 수속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17 페이지 참조)

일을 그만두고 자격을 따려고 낮에 학교에 다니는 경우 보험은 못 받나요?

낮시간에 학교를 다님으로써 앞 페이지에서 설명한 ‘실업상태’가 아니게 된 경우는 구직자급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교육법 제 1 조에 규정된 학교, 동법 제 124 조에 규정된 전수학교 또는 동법 제 134 조 제 1 항에 규정된 각종 학교의 학생 등(통신제, 야간제, 정시제 제외. 이하, ‘주간 학생’이라 함)이나 실질적으로 주간 학생과 동일한 분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므로, 구직자급부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취직’한 것에 해당하나요?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취직’이란, 이른바 정직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및 연수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는 물론, 자영업 준비나 자영업을 하는 것, 농업·상업 등의 가업에 종사하는 것, 청부·위임에 의한 노동력 제공, 가내부업, 자원봉사활동 등도 ‘취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12 실업인정신고서 쓰는 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수급자격자증 보는 법

◎앞면

雇用保険受給資格者証

(第1面)

1. 支 給 番 号		2. 氏 名	
3. 被 保 險 者 番 号		4. 性 別	5. 離 職 時 年 齡
6. 生 年 月 日		7. 求 職 番 号	
8. 住 所 又 は 居 所			
9. 支 払 方 法 (記 号 (口 座) 番 号 - 金 融 機 関 名 - 支 店 名)			
10. 資 格 取 得 年 月 日			
11. 離 職 年 月 日		12. 離 職 理 由	
13. 60 歲 到 達 時 賃 金 日 額		14. 離 職 時 賃 金 日 額	
15. 給 付 制 限		16. 求 職 申 込 年 月 日	
17. 認 定 日		18. 受 給 期 間 満 了 年 月 日	
19. 基 本 手 当 日 額		20. 所 定 給 付 日 数	
21. 通 算 被 保 險 者 期 間		22. 離 職 前 事 業 所 名	
23. 再 就 職 手 当 支 給 歴		24. 特 殊 表 示 (災 害 時、一 括、巡 相、市 町 村)	

◎뒷면

【이직 이유 11, 12, 21, 22, 23, 24, 25, 31, 32, 33 의 경우】

行数	处 理 月 日	認 定 (支 給) 期 間	日 数	種 類	支 給 金 額	残 日 数	備 考
1	0530	20-012345-6		고요 다로			다음번 인정일 06 월 27 일
2		대기만료 대기	만료일	020508			
3		020509-0529	21	기본수당	¥○○○,○○○	69	
4							

'020509-0529', '21'은 인정기간(레이와 2 년 5 월 9 일~5 월 29 일)과 인정한 지급 일수(21 일)입니다.

남은 지급 일수입니다.

【이직이유 40, 50 의 경우】 (급부제한이 있는 경우)

行数	处 理 月 日	認 定 (支 給) 期 間	日 数	種 類	支 給 金 額	残 日 数	備 考
1	0530	20-012345-6		고요 다로			다음번 인정일 08 월 22 일
2		대기만료 대기	만료일	020508			
3		급부제한기간 020509-020808	이직이유 40				
4							

'020509-020808'은 급부제한을 받은 경우에 표시되며, 이 기간(레이와 2 년 5 월 9 일~8 월 8 일)은 기본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내용에 잘못된 점이 없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만약 잘못된 점이 있을 경우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1	지급번호	수급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헬로워크 등(헬로워크 또는 지방운수국 및 해사사무소)에 문의할 때나 실업인정신고서에 기입하는 번호입니다.
2	성명	이름 읽는 법이 잘못되지는 않았습니까?(금융기관에 등록된 읽는 법과 다르면 입금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피보험자번호	고용보험에서는 앞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이 번호가 사용됩니다.
5	이직시 연령	이직 시의 만연령입니다.
6	생년월일	첫번째의 '3'은 '쇼와', 4 는 '헤이세이'를 나타냅니다. '-'의 오른쪽은 연월일을 나타냅니다.
9	지불방법	지정된 금융기관명, 지점명, 계좌번호입니다.
11	이직 연월일	이직한 날입니다.
12	이직이유	이직이유를 번호로 표시한 것입니다. 11, 12 : 해고(50 제외) 21 : 고용 해지(동일 사업주에게 3년 이상 고용) 22 : 고용 해지(동일 사업주에게 3년 미만 고용, 갱신이 명시됨) 23 : 기간 만료(동일 사업주에게 3년 미만 고용, 갱신 가능성이 명시됨) 24 : 기간 만료(21~23 이외) 25 : 정년(선원은 제외), 이직 파견 31, 32 : 정당한 이유가 있는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사업주의 권유 등) 33 : 정당한 이유가 있는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31, 32 이외) 40, 45 : 정당한 이유가 없는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 50, 55 : 자신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당한 해고
14	이직 시 임금 일액	원칙적으로 이직하기 직전 6개월 동안 지불된 임금의 합계를 180으로 나눈 액수입니다.
15	급부제한	급부제한이 있는 경우, 그 급부제한 기간입니다.
16	구직신청 연월일	헬로워크 등에 이직표를 제출하고 구직신청을 한 날입니다.
17	인정일	왼쪽은 주형, 오른쪽은 요일을 나타냅니다. (11 페이지 참조)
18	수급기간 만료일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최종일입니다.
19	기본수당 일액	받게 되는 기본수당의 1일분 금액입니다.
20	소정급부일수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입니다. (8 페이지 참조)
21	통산 피보험자기간	피보험자로 고용되어 있던 통산기간입니다. (7 페이지 참조)
23	재취직수당 지급력	과거에 재취직수당을 수급한 적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

☆ 고용보험수급자격자증은 타인에게 빌려 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분실한 경우에는 곧바로 헬로워크 등에 신고하십시오.

☆ 고용보험수급자격자증은 컴퓨터로 처리하므로 접는 선 이외의 부분을 접거나 더럽히지 마십시오.

☆ 고용보험수급자격자증은 지급이 종료된 후에도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기본수당의 일액과 급부일수는?

구직자급부 중에서 실업상태에 해당하는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기본수당’이라 합니다.

- (1) 기본수당의 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하기 직전 6 개월간 지불된 임금의 합계 금액을 180 으로 나눈 금액(임금 일액)의 약 80%~45%입니다. (기본수당의 일액은 별도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기본수당의 일액은 ‘매월 근로 통계’의 결과를 토대로 매년 8 월 1 일에 개정됩니다.

- (2) 기본수당의 일액은 연령층별로도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이 레이와 2년 8 월 1 일부터 레이와 3년 7 월 31 일까지인 경우)

임금 일액(w 엔)	급부율	기본수당 일액(y 엔)
------------	-----	--------------

●이직 시의 연령이 30 세 미만 또는 65 세 이상인 분

2,574 엔 이상 5,030 엔 미만	80%	2,059 엔~4,023 엔
5,030 엔 이상 12,390 엔 이하	80%~50%	4,024 엔~6,195 엔 (*1)
12,390 엔 초과 13,700 엔 이하	50%	6,195 엔~6,850 엔
13,700 엔(상한액) 초과	—	6,850 엔(상한액)

●이직 시의 연령이 30 세 이상 45 세 미만인 분

2,574 엔 이상 5,030 엔 미만	80%	2,059 엔~4,023 엔
5,030 엔 이상 12,390 엔 이하	80%~50%	4,024 엔~6,195 엔 (*1)
12,390 엔 초과 15,210 엔 이하	50%	6,195 엔~7,605 엔
15,210 엔(상한액) 초과	—	7,605 엔(상한액)

●이직 시의 연령이 45 세 이상 60 세 미만인 분

2,574 엔 이상 5,030 엔 미만	80%	2,059 엔~4,023 엔
5,030 엔 이상 12,390 엔 이하	80%~50%	4,024 엔~6,195 엔 (*1)
12,390 엔 초과 16,740 엔 이하	50%	6,195 엔~8,370 엔
16,740 엔(상한액) 초과	—	8,370 엔(상한액)

●이직 시의 연령이 60 세 이상 65 세 미만인 분

2,574 엔 이상 5,030 엔 미만	80%	2,059 엔~4,023 엔
5,030 엔 이상 11,140 엔 이하	80%~45%	4,024 엔~5,013 엔 (*2)
11,140 엔 초과 15,970 엔 이하	45%	5,013 엔~7,186 엔
15,970 엔(상한액) 초과	—	7,186 엔(상한액)

*1 $y = 0.8w - 0.3\{(w - 5,030) / 7,360\}w$

*2 $y = 0.8w - 0.35\{(w - 5,030) / 6,110\}w$, $y = 0.05w + 4,456$ 중 더 낮은 쪽의 액수

- (3)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일수의 상한은 이직한 날의 연령, 피보험자로 고용되어 있던 기간 및 원칙적으로 가장 최근의 이직이유 등에 따라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소정급부일수’라 합니다)

피보험자로 고용되어 있던 기간

전직 등으로 피보험자였던 기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로서 그 공백 기간이 1 년 이내인 경우에는 전후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과거에 기본수당(재취직수당 등을 포함) 또는 특례일시금을 지급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후의 피보험자였던 기간만 통산하게 됩니다.

또한 관민인사교류법 제 21 조 제 1 항에 규정된 고용계속교류채용직원이었던 기간 및 육아휴업급부를 지급 받은 기간(헤이세이 19 년 10 월 1 일 이후)도 소정급부일수를 산정하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소정급부일수

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자기 의사로 이직한 분(② 및 ③ 이외의 모든 이직자)

이직 시의 연령 \ 피보험자였던 기간		10 년 미만	10 년 이상 20 년 미만	20 년 이상
모 든 연 령		90 일	120 일	150 일

② 도산, 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 해지로 이직한 분(③ 제외)

이직 시의 연령 \ 피보험자였던 기간	1 년 미만	1 년 이상 5 년 미만	5 년 이상 10 년 미만	10 년 이상 20 년 미만	20 년 이상
30 세 미만	90 일	90 일	120 일	180 일	—
30 세 이상 35 세 미만		120 일	180 일	210 일	240 일
35 세 이상 45 세 미만		150 일		240 일	270 일
45 세 이상 60 세 미만		180 일	240 일	270 일	330 일
60 세 이상 65 세 미만		150 일	180 일	210 일	240 일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 해지에 의해 이직한 분에게 ②의 표가 적용되는 것은 잠정적 조치입니다. (레이와 4 년 3 월 31 일까지 이직한 분이 대상)

③ 장애인 등 취직이 어려운 분(본인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직 시의 연령 \ 피보험자였던 기간	1 년 미만※	1 년 이상
45 세 미만	150 일	300 일
45 세 이상 65 세 미만		360 일

※ ‘1 년 미만’ 란은 ②에 해당하는 이유 또는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이직한 분에게만 적용됩니다.

5 기본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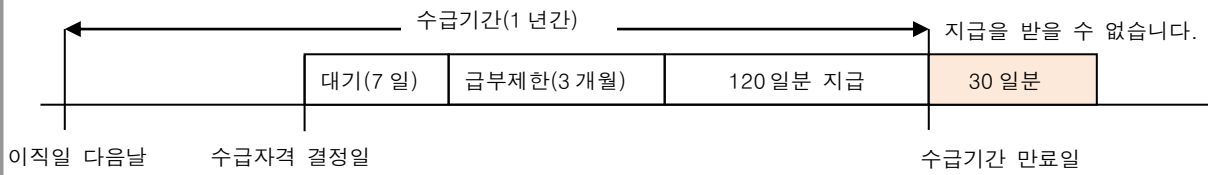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부터 1 년간(소정급부일수가 330 일인 분은 1 년간+30 일, 360 일인 분은 1 년간+60 일)입니다. 이 기간을 ‘수급기간’이라 합니다.

이 기간 내의 실업상태에 있는 날에 대해 소정급부일수를 한도로 기본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부일수분의 수급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에 기본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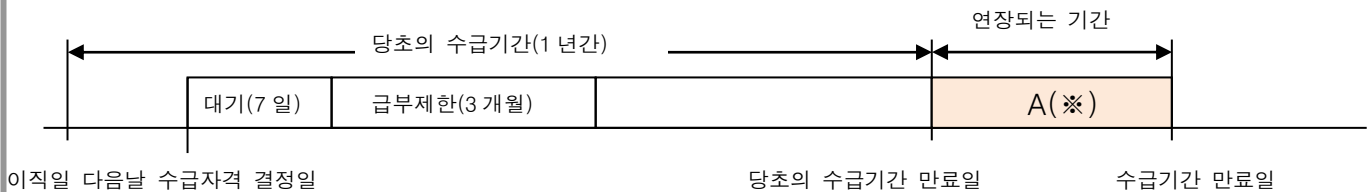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후, 헬로워크 등에서 수속이 늦어진 경우.
소정급부일수는 150 일이었지만...



이 경우, 120 일분을 지급 받은 시점에서 수급기간이 종료하므로, 30 일분은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질병이나 부상, 임신 등으로 연속 30 일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6 수급기간의 연장이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8 페이지의 ③에 해당하는 분 중, 소정급부일수가 300 일 또는 360 일이고 3 개월의 급부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이하의 수급기간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당초의 수급기간에 A 를 더한 기간이 수급기간이 됩니다.

※ $A = 21 \text{ 일} + 3 \text{ 개월}(\text{급부제한}) + 300 \text{ 일}(\text{소정급부일수}) - 1 \text{ 년}$

6 시작은 일 찾기 신청부터

고용보험 수속은 헬로워크 등(퇴직한 선원이 계속하여 선원으로 취직을 희망하는 경우는 지방운수국)에 이직표를 제출하고, 이와 함께 일 찾기를 신청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수속 개시일을 '수급자격 결정일'이라 합니다.

일 찾기를 신청할 때에는 '구직신청서'에 원하는 일의 종류와 수입 등을 기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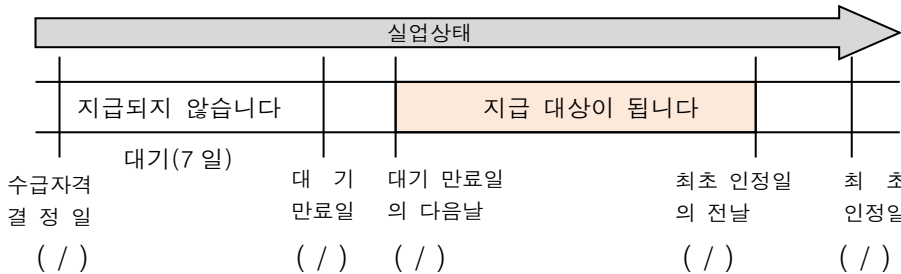
7 수급자격 결정일부터의 '대기'

수급자격 결정일부터 실업상태에 있었던 날이 통산 7 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기본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대기'라 합니다.

따라서 이 '대기'의 최종일의 다음날부터가 지급대상이 되는 날이며, 헬로워크 등에서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기본수당이 지급됩니다.

8 지급이 시작되는 것은? (급부제한이 없는 경우)

대기가 경과(이를 '대기만료'라 합니다)한 후에 계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기본수당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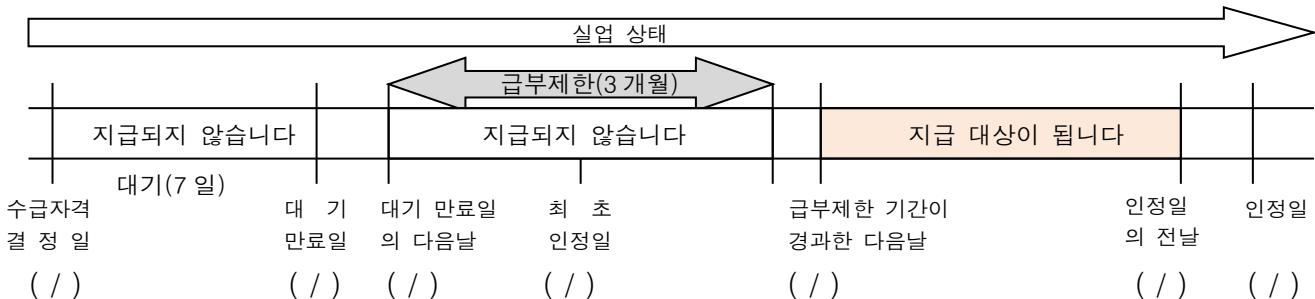


이 인정일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7 일간의 대기'와 '대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인정일 전날까지 실업상태'가 인정되어 기본수당의 지급이 시작됩니다.

9 이직 이유에 따라 3개월의 급부제한이 있습니다

이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대기가 경과(이를 '대기만료'라 합니다)한 다음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계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기본수당의 지급이 시작됩니다.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 ② 자신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된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급부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인정일에 인정을 받은 후이지만 최초 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지 않으면 대기가 경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급부제한이 있는 분도 정해진 인정일에는 반드시 헬로워크 등을 방문해 실업인정을 받으십시오.

10 지급을 전혀 받지 않는 동안에 다음 직업이 결정되면?

재취직이 결정된 경우는 취직 전날에 헬로워크 등에 취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20 취직 또는 사업의 개시가 결정되었을 때에는?'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수당이나 재취직수당 등을 지급 받지 않고 재취직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통산되어, 향후 만일 실업을 한 경우 고용보험의 소정급부일수를 산정할 때 피보험자로

고용되어 있던 기간에 포함됩니다.

통산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와 조건에 대해서는 몇가지 규정이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헬로워크 등의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실업인정이란?

기본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4 주(28 일)에 한 번 지정된 날(이를 실업 인정일이라 합니다)에 반드시 본인이 헬로워크 등을 방문하여 실업상태였던(실업상태인) 것을 ‘실업인정신고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상태’인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급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업인정에는 일정 범위의 구직활동실적에 따른 판단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인정신고서에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에 실시한 구직활동을 정확히 기입해 주십시오.** (실업인정신고서에 대해서는 ‘12 실업인정신고서 쓰는 법’을 참조하시고, 구직활동실적에 대해서는 ‘13 구직활동실적이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헬로워크 등에서는 이 신고를 바탕으로 실업상태에 있던 날에 대해 실업인정을 하고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수속을 실시합니다.

‘실업 인정일’에 대하여

여러분의 고용보험수급자격자증의 인정일 란에 인정일의 주형과 요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첨부한 달력을 이용해 인정일을 확인합니다.

曜日型	日	月	火	水	木	金	土
週型							
9	4	1	2	3	4	5	6
	1	7	8	9	10	11	12
	2	14	15	16	17	18	19
	3	21	22	23	24	25	26
4	28	29	30				
10	4			1	2	3	4
	1	5	6	7	8	9	10
	2	12	13	14	15	16	17
	3	19	20	21	22	23	24
4	26	27	28	29	30	31	
4							1

‘2 형-화’라고 인쇄된 경우

‘2 형’은 인정일의 주형을 나타냅니다. (1 형부터 4 형까지)

‘화’는 요일을 나타냅니다. (월, 화, 수, 목, 금)

※제 2 화요일이라는 뜻이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달력을 보면, 주형 2(가로)와 화요일(세로)이 교차하는 9 월 16 일이 인정일이 됩니다.

또한 다음 인정일은 10 월 14 일이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 ★인정일이 한 달에 두 번 있는 달도 있습니다.
- ★인정일이 국공휴일인 경우 미리 헬로워크 등에서 인정일을 변경한 후 헬로워크 내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게시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격자증에 다음번 인정일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12 실업인정신고서 쓰는 법

‘실업인정신고서’에 대하여

실업인정신고서는 기본수당을 받기 위한 중요한 서류이므로, 해당하는 란에 정확히 기입해 주십시오. 만약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습니다.

- 1 인정일에는 ①고용보험수급자격자증 ②실업인정신고서 ③인감(스탬프식 도장 불가)을 가지고 오십시오.
- 2 실업인정신고서는 검은색 볼펜 또는 만년필로 기입해 주십시오.
혹 잘못 기입했을 때에는 정정인을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을 통해 정정해 주십시오.
-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입이 없더라도 해당하는 란에 정확히 기입해 주십시오.
 - (1) 취직(견습, 시용기간 포함)한 경우에는 채용이 된 일자
 - (2) 가내부업이나 업무보조를 한 경우에는 그 일자
 - (3)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임시고용 및 일용직 등으로 일한 경우에는 일을 한 일자
(이러한 일이 반복되며 장기에 걸친 경우에는 ‘취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4) 자영업을 시작(준비기간 포함)한 경우, 회사 임원 등으로 취임한 경우, 농업·상업 등
가업에 종사한 경우, 청부·위임에 의한 노동력 제공을 한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그 일자

주의하십시오

- ★ 취직한 날에 대해서는 기본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5 취업수당에 대하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가내부업, 업무보조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기준으로 계산해 기본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헬로워크 등의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필요에 따라 인정 시에 운전면허증 또는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의 호출에 대하여

실업인정 창구에서 수급자를 호출할 때 창구 사무를 원활히 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서류 등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폴네임으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 사정으로 인해 폴네임 호출을 원하지 않는 분께서는 미리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신고서

(반드시 제2면의 주의사항을 읽은 후 기입해 주십시오.)

※ 장표 중별 11203

1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중에 취직, 취로, 또는 가내부업, 업무보조를 하였습니까? 가. 했음 취직 또는 취로를 한 날을 ○표, 가내부업 또는 업무보조를 한 날은 ×표를 오른쪽 달력에 기입해 주십시오. 나. 하지 않음	4	월	1	2	3	4	5	6	7	5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9	30	31				
2	가내부업 또는 업무보조를 하여 수입을 얻은 분은 수입이 있었던 날과 그 액수(매월분인지) 등을 기입해 주십시오.	수입이 있었던 날	5 월 25 일	수입액	2 0 0 0	엔	매월분의 수입인가	2	일본										
		수입이 있었던 날	월 일	수입액		엔	매월분의 수입인가	일본											
		수입이 있었던 날	월 일	수입액		엔	매월분의 수입인가	일본											
3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중에 구직활동을 하였습니까?																		
가. 구직활동을 함	(1) 구직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까?																		
	구직활동 방법	활동일	이용한 기관의 명칭	구직활동 내용															
	(가) 공공직업안정소 또는 지방운수국에 의한 직업상담, 직업소개 등	5/20	헬로워크	직업상담 결과, 주식회사 △△에 소개를 받아 5 월 23 일 면접. 합격 결과 대기중(5 월 29 일에 결과가 통지될 예정)															
	(나) 직업소개사업자에 의한 직업상담, 직업소개 등		○○																
	(다) 파견원 사업주에 의한 파견취업상담 등																		
	(라) 공적기관 등에 의한 직업상담, 직업소개 등																		
	(2) (1)의 구직활동 이외에 사업소의 구인에 응모한 적이 있는 경우는 아래 란에 기재해 주십시오.																		
	사업소명, 부서	응모일	응모방법	직종	응모하게 된 계기	응모 결과													
	(주) □□산업	5/6	직접 방문	영업	(가) 지인의 소개	5 월 16 일													
	(전화번호 03-5253-1111)				(나) 신문광고	불채용 통지 받음													
					(다) 취업정보지														
					(라) 인터넷														
					(마) 기타														
	(전화번호)				(가) 지인의 소개														
					(나) 신문광고														
					(다) 취업정보지														
					(라) 인터넷														
					(마) 기타														
	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4	지금 공공직업안정소 또는 지방운수국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소개 받으면 바로 응할 수 있습니까?	가. 응할 수 있음	나.에 ○표한 분은 바로 응할 수 없는 이유를 제 2면의 주의 8 중에서 선택해 그 기호에 ○표 해 주십시오.																
	나. 응할 수 없음	(가) (나) (다) (라) (마)																	
5	취직 혹은 자영업한 분 또는 그러할 예정인 분은 기입해 주십시오.	가. 취직	(1)공공직업안정소 또는 지방운수국 소개 (2)지방공공단체 또는 직업소개사업자 소개 (3) 자기 취직		(취직처 사업소) 사업소명 () 소재지 (주) 전화번호 ()														
		나. 자영업	월 일부터 취직(예정)																
			월 일부터 자영업 개시(예정)																
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고합니다. 레이와 2 년 5 월 28 일 (이 신고서를 제출한 날) ○○ 공공직업안정소장 님 수급자격자 성명 고요 다로 인 지급번호 (2 0 — 1 2 3 4 5 6 — 7)																		

※ 공공 직업안 정소 또 는 지방 운수국 기재란	1. 지급번호	2. 미지급 구분	3. 대기관료 연월일
	4. 지급기	가내부업 또는 업무보조로 얻 은 수입	6. 기본수당 지급일수
	7. 취업수당 지급일	8. 취업수당에 상당하는 특별급부 지급 일수	9. 취직 연월일-경로
다음번 인정일 및 시간		인정 대상 기간	※연락사항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월 일 ~ 월 일	취 급 자 인
			조 작 자 인

◎ 실업인정신고서에는 있는 그대로 기입합니다.

기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용보험 설명회에서 실시합니다.

- ①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중에 취직 및 취업, 가내부업 및 업무보조를 한 경우는 『ア
した』(가. 했음)에 ○표 하십시오.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중이란?

원칙적으로 지난번 인정일부터 이번 인정일 전날까지를 말합니다.

취직 또는 취로한 날(○), 가내부업 또는 업무보조를 한 날(×)

15 페이지의 요건을 참고하여 달력에 ○표 또는 ×표 해 주십시오.

※ 어느 경우든 수입의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또한 취직 또는 취로, 혹은 가내부업 또는 업무보조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헬로워크 등의 직원에게 문의하신 후 기입해 주십시오.

- ②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중에 가내부업 또는 업무보조를 하여 수입을 얻은 경우, 그
가내부업의 수입, 업무보조에 대한 사례 등을 받은 날과 수입액, 그 수입이 며칠분인지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 ③ 구직활동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16 페이지 참조)
구체적인 기입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중에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1)란의 해당 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1)란의 구직활동 이외에 사업소의 구인에 응모한 경우에는 (2)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 이직이유로 인해 급부제한을 받은 분은 급부제한 후 최초 실업 인정일에 급부제한 기간 중의
구직활동 상황도 기재해 주십시오.
- (1)란에는 (가)~(라)에 의해 구직활동을 한 경우 해당하는 곳에 ○표 하고, '활동일', '이용한 기관의 명칭'
및 '구직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나)~(라)의 민간 직업소개기관, 노동자 파견기관, 공적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한 기관의 명칭'
란에 기관의 명칭과 함께 그 기관의 전화번호도 기재해 주십시오.
- (2)란의 '사업소명, 부서' 란에는 응모한 사업소명과 부서명과 함께 그 부서의 전화번호도 기입해
주십시오.
또한 '응모 방법' 란에는 서류 우편, 직접 방문 등 구인에 응모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응모 결과' 란에는 예를 들어 '현재 합격결과 대기(×월 ×일 합격결과 통지 예정)', '×월 ×일
채용(불채용) 통지 받음' 등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④ 헬로워크의 직업소개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ア 応じられる』(가. 응할 수 있음)에 ○표
하십시오. 소개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イ 応じられない』(나. 응할 수 없음)에 ○표 한 후
그 이유를 앞면 8의 (가)~(마) 중에서 선택해 ○표 하십시오.

- ⑤ 취직이 결정된 경우에는 취직(예정) 연월일, 취직처 사업소 등을 정확히 기입해 주십시오. (견습,
시용 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첫날을 기입해 주십시오)

- ⑥ 인정일 연월일, 지급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수급자격자 성명란에 기명 날인 또는 자필 서명해
주십시오.

취직 또는 취로란? (실업인정신고서의 달력에 ○표를 하는 경우)

- 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취직의 경우는 실업인정신고서의 5 가. 란에도 기입)
 - ②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 일 노동시간이 4 시간 이상인 경우.**
※계약 기간이 7 일 이상인 고용계약에서 주당 소정노동시간이 20 시간 이상, 또한 주당 취업일이 4 일 이상인 경우는 실제로 취로를 하지 않은 날을 포함해 취직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 ③ 회사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1 일 노동시간 불문)
 - ④ 자영업 준비, 자영업 실시, 상업·농업 등의 가업에 종사, 청부·위임에 의한 노동력 제공, 가내부업,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1 일 노동시간이 4 시간 이상인 경우.**
 - ⑤ ④에 열거한 활동을 실시하였고, **1 일 노동시간이 4 시간 미만이었으나 그에 전념하기 위해 헬로워크 등의 소개에 바로 응할 수 없는 등, 다른 구직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 ①, ②, ③의 경우는 임금 등의 보수가 없더라도 취직 또는 취로한 것이 됩니다.

가내부업 또는 업무보조(실업인정신고서의 달력에 ×표 한 경우)

- ①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자영업 준비, 자영업 실시, 상업·농업 등의 가업에 종사, 청부·위임에 의한 노동력 제공, 가내부업,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1 일 노동시간이 4 시간 미만**(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이었던 경우.
 - ② 자영업 준비, 자영업 실시, 상업·농업 등의 가업에 종사, 청부·위임에 의한 노동력 제공, 가내부업,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우로서, 1 일 노동시간이 4 시간 이상이었으나 1 일당 수입액이 임금 일액의 최저액(*) 미만이었던 경우.
* 2,574 엔. 이 액수는 매년 8 월 1 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가내부업 또는 업무보조에 의한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내부업 또는 업무보조를 한 사실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내부업 또는 업무보조에 의해 수입이 있었던(자기 노동에 의해 수입을 얻은) 경우는 그 수입 금액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구직활동실적이란?

일을 찾는 방법에는 헬로워크 등이 준비한 각종 메뉴는 물론, 신문광고나 인터넷 구인정보 검색, 지인에게 소개를 부탁하는 것 등 다양한 것이 있으나, 기본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실적이 필요합니다. 이 실적을 '구직활동실적'이라 합니다. (구직활동실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다음 페이지 참조)

기본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구직활동실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을 원칙적으로 지난번 인정일부터 이번 인정일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최저 **2 회** 이상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급부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급부제한 기간과 그 직후의 인정 대상기간을 합한 기간 중에 원칙적으로 **구직활동실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을 최저 **3 회** 이상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4 구직활동실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구직활동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헬로워크나 신문, 인터넷 등으로 구인정보를 열람한 것, 지인에게 소개를 부탁한 것 등은 구직활동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구인에 응모
- ② 헬로워크 등, 선원고용촉진센터가 실시하는 직업상담, 직업소개 등
- ③ 헬로워크 등, 선원고용촉진센터가 실시하는 각종 강습, 세미나 수강
- ④ 허가·신고가 된 민간기관(민간 직업소개사업소, 노동자파견사업소)이 실시하는 직업상담, 직업소개 등
- ⑤ 허가·신고가 된 민간기관(민간 직업소개사업소, 노동자파견사업소)이 실시하는 구직활동 방법 등을 지도하는 세미나 등의 수강
- ⑥ 공적기관 등(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구직자 고용지원기구, 지방자치체, 구인정보 제공회사, 신문사 등)이 실시하는 직업상담 등
- ⑦ 공적기관 등(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구직자 고용지원기구, 지방자치체, 구인정보 제공회사, 신문사 등)이 실시하는 각종 강습 및 세미나, 개별 상담이 가능한 기업 설명회 등의 수강, 참가 등
- ⑧ 재취직에 도움이 되는 각종 국가시험, 검정 등의 자격시험 수험 등

※ 구직활동실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헬로워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구직활동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한 재취직을 실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평소에 일을 찾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또한 신고된 구직활동실적은 이용기관 등에 문의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실과 다른 신고는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15 기본수당의 지불에 대하여

기본수당은 실업인정을 받은 후 그 인정된 일수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또한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것은 실업 인정일의 약 7 일 후입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입금까지 걸리는 기간이 다릅니다. 또한 토, 일, 국공휴일 등으로 금융기관이 쉬는 경우에는 그 일수분만큼 입금이 늦어집니다)

또한 예금(저금)계좌는 본인 명의의 보통예금(저축계좌 이외)만 입금이 가능하므로 주의하십시오.

또한 입금 명의를 ‘コウセイロウトウシヨウシヨクキョウアンテイキョク’입니다. 통장에는 상기 명의를 일부가 인쇄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 ☆ 성명을 변경할 때는 통장 명의만 변경하면 입금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새 명의의 통장을 첨부하여 헬로워크 등의 담당 직원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 ☆ 입금된 급부금 액수에 대해 고용보험수급자격자증의 금액과 예금통장의 금액이 틀림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 궁금한 점은 헬로워크 등의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수급기간의 연장이란?

기본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부터 1 년간(8 페이지 참조)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3 세 미만),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간호, 친족 등의 간호, 배우자의 해외 근무에 본인이 동행하는 경우, 일정한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연속 30 일 이상 직업에 임할 수 없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업에 임할 수 없는 일수를 수급기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에 추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 년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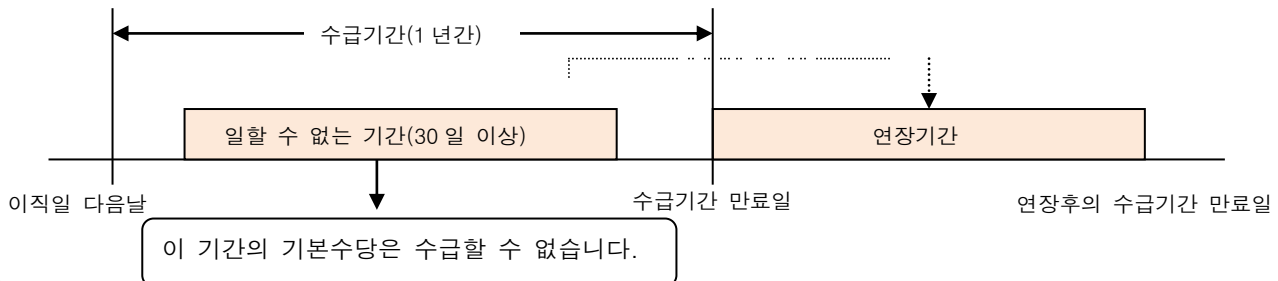
수급기간 연장의 신청 수속에 대하여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속 30 일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날의 다음날 이후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장 후 수급기간의 마지막날까지의 기간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헬로워크 등에 이하의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 1 '수급기간연장신청서'
- 2 '고용보험수급자격자증'
- 3 '연장이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우편 또는 대리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예시



수급기간의 연장이 인정되면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드립니다., 기재된 연장 이유가 끝난 경우 곧바로 헬로워크 등에 신고해 주십시오.

또한 연장이유 등에 따라서는 의사의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의 결정을 받은 후, 질병이나 부상으로 15 일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는 기본수당 대신 동액의 상병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3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0 세 이상의 정년퇴직자 등의 수급기간 연장에 대하여

60 세 이상(선원은 50 세 이상)의 정년퇴직이나 정년 후의 계속고용 종료에 의해 퇴직하였고,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구직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신청한 기간(최장 1 년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2 개월 이내입니다. 이 취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헬로워크 등에 이직표를 제출할 때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직신청을 한 후에는 이 취급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소개 거부 등으로 인한 급부제한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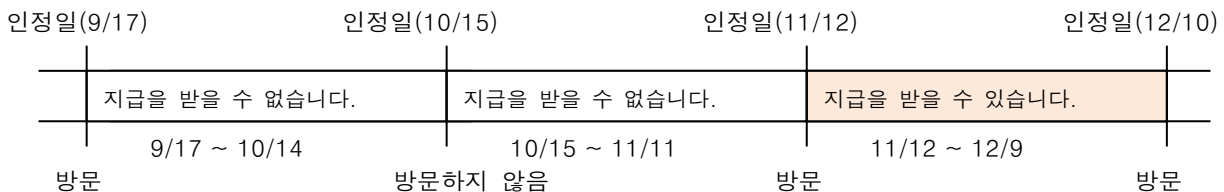
헬로워크 등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 지시한 공공직업훈련을 받는 것, 헬로워크 등이 실시하는 직업지도를 받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을 때 또는 공공직업훈련을 개인사정으로 중도에 퇴교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개월간 기본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18 인정일에 헬로워크 등을 방문하지 않았을 때에는?

인정일에 헬로워크 등을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인정일까지의 기간과 방문하지 않은 인정일 당일은 **실업인정(기본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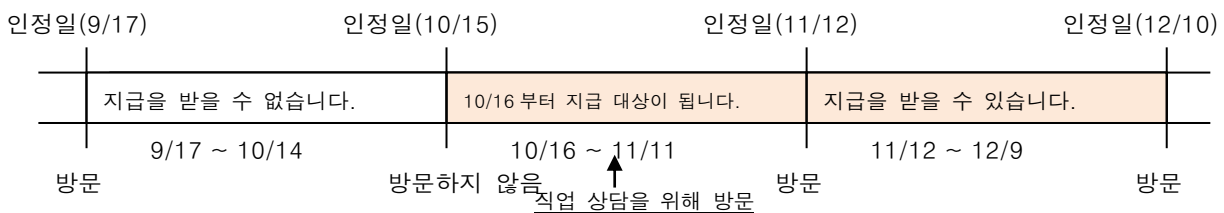
그리고 다음 인정일 전날까지 헬로워크 등을 방문해 직업상담 등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인정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하의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10월 15일의 인정일에 방문하지 않고 다음번 11월 12일의 인정일에 방문한 경우



방문하지 못한 인정일(10/15)의 다음 인정일(11/12) 전날(11/11)까지 방문하지 않으면 9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 56일간은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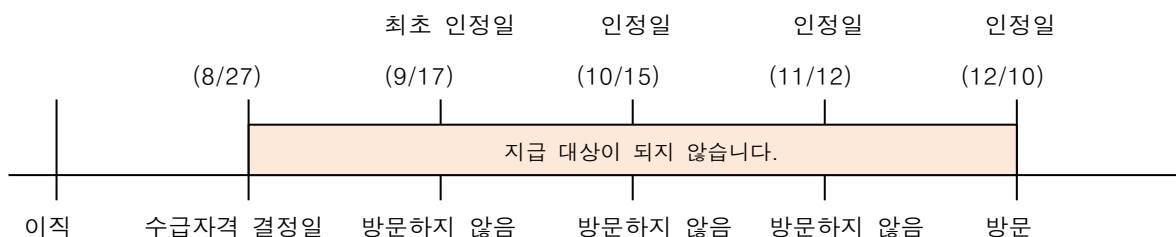
② 10월 15일의 인정일에 방문하지 않고 10월 16일부터 11월 11일 사이에 방문하여 직업상담을 받은 후, 다음번 11월 12일의 인정일에 방문한 경우



9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29일간은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0월 16일~11월 11일의 기간도 원칙적으로 2회 이상 구직활동실적이 필요합니다.

③ 급부제한 3개월인 분이 정해진 인정일에 방문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방문한 경우



대기 및 급부제한이 종료되지 않아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0 페이지 참조)

19 인정일의 변경에 대하여

소정의 인정일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 취급으로 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반드시 헬로워크 등에 미리 연락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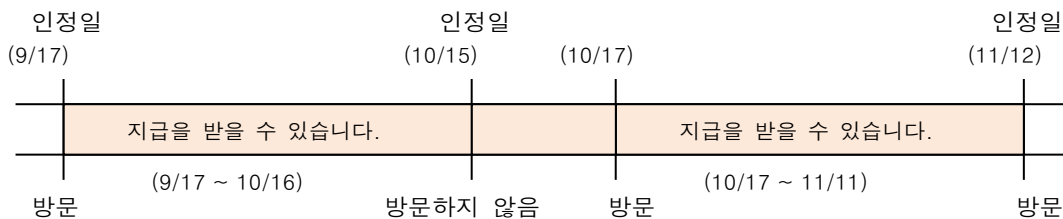
또한 인정일 변경 취급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증명서 등은 헬로워크 등의 창구에서 지시를 받도록 하십시오)

어쩔 수 없는 이유란?

- ☆ 취직
- ☆ 구인자와의 면접, 신고, 채용시험 등
- ☆ 각종 국가시험, 검정 등 자격시험의 수험
- ☆ 헬로워크 등의 지도에 따라 각종 강습 등을 수강하는 경우
- ☆ 일할 수 없는 기간이 14 일 이내인 질병, 부상
- ☆ 본인의 혼인
- ☆ 친족의 간호, 위독 또는 사망, 혼인(모든 친족이 아니라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 중학생 이하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 등입니다.

예시

질병으로 인해 10 월 15 일의 인정일에 방문하지 못하고, 헬로워크 등의 지시에 따라 10 월 17 일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가지고 방문한 경우



10 월 17 일에는 9 월 17 일부터 10 월 16 일까지의 30 일분을 인정 받고, 11 월 12 일에는 10 월 17 일부터 11 월 11 일의 26 일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인정일에 방문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가 다음 ①에서 ③ 중 어느 하나일 때에는 그 이유를 증명하는 증명서에 따라 다음번 인정일에 종합하여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헬로워크 등에 연락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하십시오.

- ① 일할 수 없는 기간이 14 일 이내인 질병, 부상의 경우(상병증명서)
- ② 헬로워크 등의 소개를 통해 구인자와 면접을 한 경우(면접증명서)
- ③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고(수해, 지진, 교통사고 등)로 인해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관공서의 증명)

20 취직 또는 사업의 개시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취직(시용기간, 연수기간,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포함) 또는 사업의 개시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취직 또는 사업(사업 개시를 위한 준비기간이 있는 경우는 준비)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에 헬로워크 등을 방문한 후, 실업인정신고서를 통해 취직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으십시오.

취직 신고에 필요한 것

- ☐ 고용보험수급자격자증
- ☐ 실업인정신고서
- ☐ 채용증명서 등

또한 재취직수당 등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한 후 지급신청 용지를 드립니다.

- ※ 고용보험 설명회 때까지 취직이 결정된(취직일이 고용보험 설명회보다 빠른 일자) 경우에는 이 ‘가이드’ 및 설명회에 가지고 오도록 지시 받은 것을 지참한 후, 취직일 전날에 헬로워크 등을 방문해 취직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취직일보다 먼저 인정일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인정일에 헬로워크 등을 방문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 헬로워크 등을 방문한 후에 소정의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재취직수당 등은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 재취직수당에 대하여

기본수당 소정급부일수의 3 분의 1 이상의 지급일수를 남기고 안정적인 직업에 취직하여 지급요건을 전부 충족한 경우에 재취직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소정급부일수의 3 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취직한 경우는 지급잔일수의 **60%**, 소정급부일수의 3 분의 2 이상을 남기고 취직한 경우는 지급잔일수의 **70%**에 기본수당 일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입니다.

소정급부일수	지급잔일수		재취직수당 액수
	지급률 60%의 경우	지급률 70%의 경우	
90 일	30 일 이상	60 일 이상	$\text{기본수당일액} \times \text{소정급부일수의 지급잔일수} \times \begin{matrix} 60\% \\ \text{또는} \\ 70\% \end{matrix}$ (※상한 있음) (1 엔 미만의 끝수는 버림)
120 일	40 일 이상	80 일 이상	
150 일	50 일 이상	100 일 이상	
180 일	60 일 이상	120 일 이상	
210 일	70 일 이상	140 일 이상	
240 일	80 일 이상	160 일 이상	
270 일	90 일 이상	180 일 이상	
300 일	100 일 이상	200 일 이상	
330 일	110 일 이상	220 일 이상	
360 일	120 일 이상	240 일 이상	

※ 재취직수당을 산출할 때의 기본수당 일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 이직 시의 연령이 60 세 미만인 분 6,195 엔

○ 이직 시의 연령이 60 세 이상 65 세 미만인 분 ... 5,013 엔

(기본수당의 상한액은 매년 8 월 1 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취직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수당의 액수를 기본수당 일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에 상당하는 일수분의 기본수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급잔일수’란?

소정급부일수에서 동일한 지급자격에 기초해 이미 기본수당을 지급 받은 일수, 또는 상병수당, 취업수당, 재취직수당을 지급 받음으로써 기본수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일수를 뺀 일수를 말합니다.

※ 지급잔일수가 취직일부터 수급기간 만료 연월일까지의 일수를 초과할 때에는 취직일부터 수급기간 만료 연월일까지의 일수가 지급잔일수가 됩니다.

또한 급부제한 기간 중에 취직한 경우로서, 지급잔일수가 급부제한 기간의 마지막날의 다음날부터 수급기간 만료 연월일까지의 일수를 초과할 때에는 급부제한 기간의 마지막날의 다음날부터 수급기간 만료 연월일까지의 일수가 지급잔일수가 됩니다.

재취직수당의 지급요건

다음 ①에서 ⑧의 요건을 전부 충족한 경우에 재취직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일정 요건 하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재취직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지급요건 등은 헬로워크 등의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취직일 전날까지의 실업인정을 받은 후의 기본수당의 지급잔일수가 소정급부일수의 3 분의 1 이상일 것

(지급잔일수가 취직일부터 수급기간 만료 연월일까지의 일수를 초과할 때에는 취직일부터 수급기간 만료 연월일까지의 일수가 지급잔일수가 됩니다) ※지급잔일수에 대한 것은 상기의 “지급잔일수’란?”을 참조.

②1 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것

(1 년 이하의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고용계약을 갱신할 때 일정한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1 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이 확실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대기 만료일 후의 취직일 것

④이직이유에 의한 급부제한을 받은 경우는 대기 만료일 후 1 개월간은 헬로워크 등 또는 허가·신고된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소개를 통해 취직한 것일 것

⑤이직 전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것이 아닐 것

(자본, 자금, 인사, 거래 등의 상황으로 보아 이직 전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주도 포함합니다)

⑥취직일 전 3 년 이내의 취직에 대해 재취직수당 또는 상용취직준비수당을 지급 받지 않았을 것

⑦수급자격 결정(구직 신청) 전부터 채용이 내정되어 있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닐 것

⑧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고용되었을 것

(예를 들어 위임계약, 위탁계약 등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급 결정일부터 약 1 주일 정도 후 소정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신청내용의 확인 결과 등에 따라서는 지급을 결정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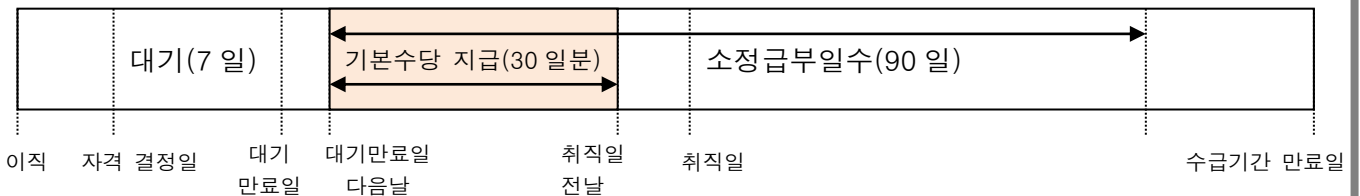
‘헬로워크 등의 소개를 통한 취직’이란?

헬로워크 등의 소개를 받고 사업소에 면접을 가서 취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헬로워크 등의 공개구인이나 구인정보지 등을 보고 본인이 직접 응모하여 취직한 경우는 ‘헬로워크 등의 소개를 통한 취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2 재취직수당을 활용합시다

재취직수당은 조기에 재취직하면 급부율이 60%→70%으로 올라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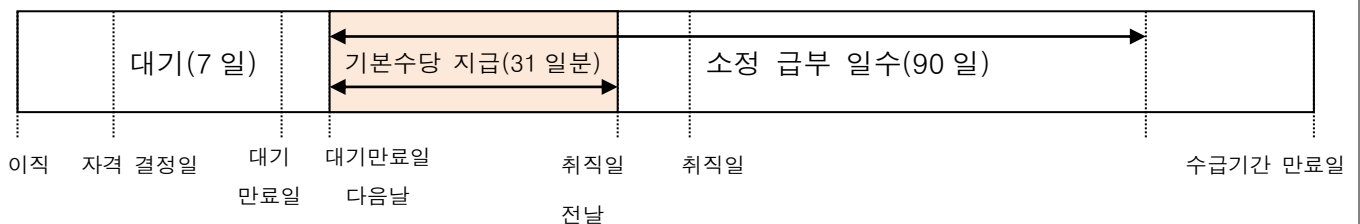
□ 기본수당 일액 4,000 엔, 소정급부일수 90 일인 분이 지급잔일수 60 일 시점에 취직한 경우



□ 소정급부일수 90 일에 대하여 기본수당의 잔일수가 60 일(3 분의 2 이상)이므로, 재취직수당의 지급률은 70%가 됩니다.

□ 재취직수당의 금액은 4,000 엔 × 60 일 × 70% = 168,000 엔이 됩니다.

□ 기본수당 일액 4,000 엔, 소정급부일수 90 일인 분이 잔일수 59 일 시점에 취직한 경우



□ 소정급부일수 90 일에 대하여 기본수당의 잔일수가 59 일(3 분의 1 이상)이므로, 재취직수당의 지급률은 60%가 됩니다.

□ 재취직수당의 금액은 4,000 엔 × 59 일 × 60% = 141,600 엔이 됩니다.

23 재취직수당의 수속은?

재취직수당의 신청 수속에 대하여

신청기한은 취직일 다음날부터 1 개월 이내입니다.

재취직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하의 서류를 헬로워크 등에 제출해 주십시오.

- 1 재취직수당지급신청서(취직처 사업주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 2 고용보험수급자격자증
 - 3 기타 헬로워크 등에서 요청하는 서류
- ※ 제출은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주의하십시오

헬로워크 등에서 취직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재취직수당 신청 수속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재취직수당을 지급 받으면 동일한 취직을 이유로 하는 고연령 재취직급부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36 고용계속급부에 대하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4 재취직수당을 수급한 후에도 급부가 있습니다

조기에 재취직하여 재취직수당을 지급 받은 사람이 계속하여 그 재취직처에 6 개월 이상 고용되고 또한 재취직처에서 6 개월 동안 지불된 임금이 고용보험의 급부를 받기 직전 임금에 비해 낮아진 경우, 취업촉진정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정착수당의 지급요건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재취직수당을 지급 받았을 것.
- ② 재취직수당을 지급 받은 재취직일부터 같은 사업주에게 연속 6 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을 것.
※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한 파견 등이어도 재취직수당을 지급 받은 재취직일부터 6 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개시로 인해 재취직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이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③ 재취직수당을 지급 받은 재취직일부터 6 개월간 지불된 임금액의 1 일분 액수(A)가 이직 전의 임금 일액(B)을 밑돌 것. (A와 B의 원칙적인 계산 방법은 p.6의 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직 전의 임금 일액이 하한액인 경우에는 재취직 후 6 개월간의 임금의 1 일분 액수가 이직 전의 임금 일액을 밑돌 수 없으므로 이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액 = (B - A) × 재취직일부터 6 개월간 내의 임금 지불의 기초가 된
일수(월급제인 경우는 달력상 일수, 일급제 또는 시급제인 경우는 노동일수)

단, 다음과 같이 상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기본수당 일액(※1) × 기본수당의 지급잔일수에 상당하는 일수(※2) × 30%(※3)

※1 기본수당 일액에도 재취직수당과 마찬가지로 상한액이 있습니다.

※2 재취직수당을 급부 받기 전의 지급잔일수입니다.

※3 재취직수당의 지급률이 60%인 경우는 40%입니다.

□ 60 세 미만의 시점에 이직하여 이직 시 임금이 월급제 30 만엔, 기본수당은 5,687 엔이었던
분이 지급잔일수가 90 일인 상태에서 재취직하여 재취직수당을 수급.

재취직 후 6 개월간의 임금이 월급제 28 만 5 천엔이 된 경우.

□ 이직 전의 임금 일액은 10,000 엔(B), 재취직 후 6 개월간의 임금의 1 일분 액수는
9,500 엔(A)입니다.

□ 임금지불 기초일수는 월급제이므로 달력상 일수(183 일로 계산)입니다.

□ 취업촉진정착수당의 금액을 계산식을 이용해 계산하면
(10,000 엔 - 9,500 엔) × 183 일 = 91,500 엔 이 됩니다.

□ 이 경우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으므로, 91,500 엔이 지급됩니다.

5,687 엔 × 90 일 × 30% = 153,549 엔

신청에 대하여

신청기한은 취직일부터 6 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2 개월 이내입니다.

취업촉진정착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하의 서류를 헬로워크 등에 제출해 주십시오.

1 신청서(취직처 사업주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2 고용보험수급자격자증

3 출근부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헬로워크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제출은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25 취업수당에 대하여

실업 중에 아르바이트 등 1 년을 초과할 전망이 없는 직업에 취직한(재취직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취업일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전부 충족한 경우에는 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취업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도 그 후에 그 취업이 안정적인 직업이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취직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의 지급잔일수는 '안정적인 직업에 취직한' 날의 전날 시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취업수당의 금액은

취업일마다 기본수당 일액의 30%에 상당하는 액수(1 엔 미만의 끝수는 버림)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수당을 산출할 때의 기본수당 일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 이직 시 연령이 60 세 미만인 분 6,195 円

○ 이직 시 연령이 60 세 이상 65 세 미만인 분 ... 5,013 円

(기본수당의 상한액은 매년 8 월 1 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취업수당을 지급 받은 날에 대해서는 기본수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 지급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직업에 취직한 날의 전날 기본수당의 지급잔일수가 소정급부일수의 3 분의 1 이상이면서 45 일 이상일 것.
- ② 재취직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직업에 취직하였을 것.
- ③ 대기 만료일 후의 취업일 것.
- ④ 이직이유에 의한 급부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대기만료 후 1 개월간은 헬로워크 등 또는 허가·신고된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소개를 통한 취업일 것.
- ⑤ 이직 전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것이 아닐 것.
(자본, 자금, 인사, 거래 등의 상황으로 보아 이직 전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주도 포함)
- ⑥ 수급자격 결정(구직신청) 전부터 채용이 내정되어 있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닐 것.

취업수당의 신청 수속에 대하여

4 주에 한 번 있는 실업 인정일에 지난번 인정일부터 이번 인정일 전날까지의 각 날에 대해 '취업수당지급신청서'에 '고용보험수급자격자증' 및 '취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취직일 이후에 실업인정을 할 필요가 없는 분은 지급신청서를 대리인(위임장 필요)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사업주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26 상용취직준비수당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한 분이 기본수당의 지급잔일수가 소정급부일수의 3 분의 1 미만인 시점에 헬로워크 등 또는 허가·신고가 된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소개로 안정적인 직업에 취직하여 지급요건을 전부 충족하였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45 세 이상으로 고용대책법 등에 기초한 재취직 지원 계획 등의 대상이 되는 분

○ 장애가 있는 등 취직이 어려운 분

상용취직준비수당의 금액은

지급액은 90(소정급부일수의 지급잔일수가 90 일 미만인 경우는 지급잔일수에 상당하는 수. 그 수가 45 를 밑도는 경우는 45)에 기본수당 일액을 곱하여 얻은 액수의 10 분의 4 입니다. (1 엔 미만의 끝수는 버림)

또한 소정급부일수가 270 일 이상인 수급자격자는 일률적으로 36 일분입니다.

※ 상용취직준비수당을 산출할 때의 기본수당 일액에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 이직 시의 연령이 60 세 미만인 분 6,195 엔
 - 이직 시의 연령이 60 세 이상 65 세 미만인 분 ... 5,013 엔
- (기본수당의 상한액은 매년 8 월 1 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지급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 ① 기본수당의 지급잔일수가 소정급부일수의 3 분의 1 미만일 것.
- ② 헬로워크 등 또는 허가·신고된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소개를 통해 취직하였을 것.
- ③ 1 년 이상 연속하여 고용될 것이 확실할 것.
- ④ 이직 전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것이 아닐 것.
- ⑤ 대기 만료일 후에 직업에 취직하였을 것.
- ⑥ 급부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직업에 취직하였을 것.
- ⑦ 원칙적으로 취직일에 지급잔일수가 남아 있을 것.
- ⑧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용일 것.
- ⑨ 취직일 전 3 년 이내의 취직에 대해 재취직수당 또는 상용취직준비수당을 지급 받지 않았을 것.
- ⑩ 재취직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을 것.

※지급에 관한 조사를 할 때 그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용취직준비수당의 신청 수속에 대하여

신청기한은 취직일 다음날부터 1 개월 이내입니다.

상용취직준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하의 서류를 헬로워크 등에 제출해 주십시오.

- 1 상용취직준비수당지급신청서(취직처 사업주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 2 고용보험수급자격자증
- 3 그 밖에 헬로워크 등이 요청하는 서류

※ 제출은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 및 불지급을 결정하는 데 일정한 조사 기간(1 개월 정도)이 소요됩니다.

27 그 밖의 취직촉진급부에 대하여

그 밖의 취직촉진급부로는 이전비, 광역구직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이전비에 대하여

이전비란, 수급자격자가 헬로워크, 특정 지방공공단체 또는 직업소개사업자가 소개한 직업에 취직하기 위해 또는 헬로워크의 소장이 지시한 공공직업훈련 등을 수강하기 위해 그 주거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헬로워크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이전비를 수급할 수 있는 분은 이하와 같은 분입니다.

기본수당의 수급자격자가 헬로워크, 특정 지방공공단체 또는 직업소개사업자가 소개한 직업에 취직하기 위해 또는 헬로워크의 소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분.

(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직하였거나 또는 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관할 헬로워크의 소장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 i) 일반적인 교통기관을 이용하거나 또는 일반적인 교통기구를 이용해 통근하는 데 걸리는 왕복 소요시간이 4 시간 이상일 때
- ii) 교통기관의 첫차(막차) 등의 교통편이 나빠 통근하는 데 현저한 장애를 줄 때
- iii) 취직처의 사업소 또는 훈련 등을 수강하는 훈련시설의 특수성 또는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이전할 수 밖에 없을 때

(나) 해당 취직 또는 공공직업훈련 등의 수강에 대하여, 취직준비금, 또는 그 밖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취직처의 사업주, 공공직업훈련 등의 시설의 장,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지급되지 않을 때 또는 그 지급액이 이전비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분.

또한 상기 (가), (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취직처의 고용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 순환적으로 고용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 분이 이직 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재고용된 경우, 직업소개 거부 등으로 인한 급부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그 급부제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취직하였거나 또는 공공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 등은 이전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수속 등에 대한 것은 헬로워크 등의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지원비에 대하여

구직활동지원비란, 광역구직활동비, 단기훈련수강비, 구직활동관련 서비스이용비로 이루어지며, 수급자격자가 구직활동에 따라 다음의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헬로워크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 ① 헬로워크의 소개를 통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광역구직활동비)
- ② 헬로워크의 직업지도에 따라 단기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단기훈련수강비)
- ③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육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구직활동관련 서비스이용비)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헬로워크의 소개를 통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며, 다음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입니다.

(가) 소개 받은 구인이 해당 수급자격자 등에게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는 구인자의 사업소와 관련한 상용구인일 것.

(나) 철도요금, 선박요금, 항공비 및 자동차비용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리가 왕복 철도 200 킬로미터(수로 및 육로는 4 분의 1 킬로미터를 각각 철도 1 킬로미터로 간주) 이상일 것.

상기 (가) 및 (나)의 수급자격자라도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광역구직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i)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광역구직활동을 시작하였을 때

ii) 광역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처의 사업소에서 지급되지 않을 때 또는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액수에 미치지 못할 때.

또한 상기 i), ii) 이외에 직업소개 거부 등으로 인해 급부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그 급부제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광역구직활동을 시작한 경우 등은 광역구직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기훈련수강비】

단기훈련수강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헬로워크의 직업지도로 재취직을 위해 1 개월 미만의 교육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수료한 분으로, 다음 (가)~(라) 모두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입니다.

(가) 교육훈련을 수강하기 전에 그 훈련을 받기 위한 헬로워크의 직업지도를 받았을 것.

(나) 직업지도를 받는 날에 수급자격자일 것.

(다)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육훈련의 수강을 시작하였을 것.

(라) 교육훈련급부제도(일반교육훈련)의 강좌 지정을 받은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는 일반교육훈련급부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아닐 것.

【구직활동관련 서비스이용비】

구직활동관련 서비스이용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구인자와의 면접 등을 하기 위해 또는 교육훈련을 수강하기 위해 그 자녀의 보육 등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서, 다음의 (가)~(라) 모두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입니다.

(가) 보육 등 서비스를 이용한 날에 수급자격자일 것.

(나)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육 등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것.

(다) '구인자와의 면접 등'이란, 구인자와의 면접 이외에 필기시험 응시, 헬로워크 등, 허가·신고된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직업상담, 직업소개 등이 해당하며, 그 밖에도 공적기관 등(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구직자 고용지원기구, 지방자치체, 구인정보 제공회사, 신문사 등)이 실시하는 구직활동에 관한 지도, 개별상담이 가능한 기업 설명회 등을 포함함.

(라) '교육훈련의 수강'이란, 헬로워크의 지도·추천에 의해 공공직업훈련 등을 수강하는 경우, 취직지원계획에 기초해 구직자 지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헬로워크의 지도에 따라 각종 양성시설에 입학하는 경우, 교육훈련급부의 대상 훈련 및 단기훈련수강비의 대상 훈련 등을 수강한 경우 및 파견·이적지원업무로 실시되는 위탁훈련·강습 등을 수강하는 경우를 뜻함.

(신청 수속 등에 대한 것은 헬로워크 등의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8 취직한 후에 다시 이직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당초의 수급기간 내(8 페이지 참조)에 지급잔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기본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대상이 되는 날은 이직 후에 헬로워크 등을 방문하여 신고하고, 재취직 신청을 한 날(급부제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급부제한 기간 경과 후)부터이므로, 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헬로워크 등을 방문하여 신고하도록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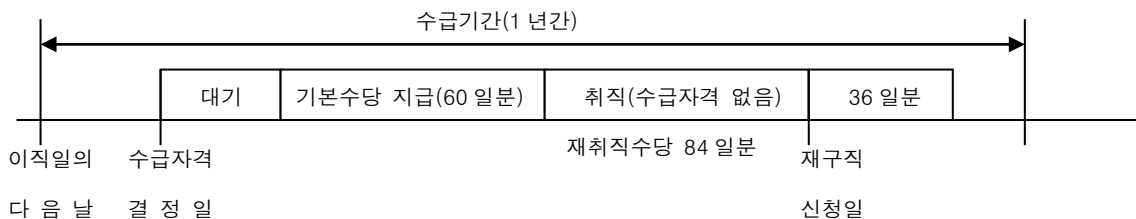
또한 재취직수당 등을 지급 받은 경우는 그 지급일수분을 뺀 범위 내(끝수는 버림)에서 기본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것

- ☐ 고용보험수급자격자증
- ☐ 이직표 또는 상실확인통지서(추후에 제출해도 됩니다)

예시

소정급부일수가 180 일인 분이 기본수당 60 일분을 지급 받은 후 재취직하고, 재취직수당 84 일분을 지급 받은 후에 이직하였을 때



$180 \text{ 일(소정급부일수)} - 60 \text{ 일(기본수당)} - 84 \text{ 일(재취직수당)} = 36 \text{ 일}$ 의 범위 내에서 기본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직수당 등을 수급한 후 재이직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재취직수당 등을 지급 받은 후의 첫 이직(새로 수급자격이 발생한 후의 이직을 제외합니다. 이하, '재이직'이라 합니다)일이 수급기간 내이면서 도산, 해고 등으로 인해 재이직한 분은 일정한 수급기간이 연장됩니다.

새 수급자격을 얻은 경우

취직한 사업소에서 피보험자가 되어 12 개월 이상(해고·도산 등으로 퇴직한 분인 경우는 6 개월 이상) 일한 후에 이직한 경우는 보통 새로 고용보험의 수급자격이 발생하므로, 그 수급자격으로 기본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지급을 받기 위한 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2 페이지 참조)

또한 새로 수급자격을 얻은 경우는 이전의 수급자격에 기초한 지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29 성명과 주소를 변경했을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헬로워크 등에 신고하십시오.

주소를 변경한 경우, 고용보험 수속을 하러 가는 관할 헬로워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것

- ☐ 고용보험수급자격자증
- ☐ 성명, 주소변경신고서(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 ☐ 지불희망금융기관변경신고서(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30 안정소장·지방운수국장의 지시에 따라 공공직업훈련 등을 수강할 때에는?

헬로워크 등에서는 여러분의 재취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경우, 공공직업훈련 등을 수강하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정급부일수분의 지급이 종료된 후에도 훈련 수료일까지 기본수당이 연장 지급됩니다.

이 외에 훈련을 수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강수당, 통소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3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수급자격을 결정 받은 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15 일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기본수당 대신 같은 금액의 상병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 노재보험 등, 다른 법률에 기초하여 상병수당금, 휴업보상금부 등을 지급 받은 경우나 대기기간 중 및 급부제한 기간 중인 날은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속 30 일 이상 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지급 받지 않고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상병이 치유된 후에 기본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의 연장에 대한 것은 17 페이지 참조)

상병수당의 신청 수속에 대하여

상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하의 서류를 헬로워크 등에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기간은 상병이 치유된 직후의 인정일까지입니다.

- 1 상병수당지급신청서
- 2 고용보험수급자격자증

※ 제출은 대리인이 해도 상관 없으나, 그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상병기간이 1 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헬로워크 등에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보험 종류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건강보험증'(사본도 가능)을 지참해 주십시오.

32 만약 수급자격자 본인이 수급 중에 사망했을 때에는?

만일 수급 중에 수급자격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분과 생계를 함께 하던 유족께서 사망 전날(일정한 경우에는 당일)까지의 기본수당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미지급실업등급부'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급자격자 본인이 사망한 날의 다음날부터 6 개월 이내에 '미지급실업등급부청구서'를 헬로워크 등에 제출해 주십시오.

33 실업등급부는 올바르게 수급합시다

◎ 부정수급이란?

실업등급부를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을 통해 실업등급부를 지급 받았거나 지급 받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지급을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 구직활동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신고서에 그 실적에 대해 허위로 신고한 경우.
- ☐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고용 형태는 묻지 않습니다. 시용(연수)기간도 포함합니다)에 그 사실을 실업인정신고서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채용일, 고용되어 일한 사실 및 수입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 노재보험의 휴업(보상)급부나 건강보험의 상병수당금 등을 지급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의 지급이 종료된 후 고용보험을 수급한 기간에 대해 노재보험의 휴업보상급부를 소급하여 지급 받은 경우를 포함)
- ☐ 취직하지 않았음에도 취직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거나 취직한 날을 허위로 신고하여 재취직수당 등을 지급 신청한 경우.
- ☐ 회사 임원 등으로 취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허위로 기재한 이직표(이직이유를 포함)를 제출한 경우.

◎ 룰을 지켜 올바르게 수급합시다.

만일 부정수급을 하면,

- ☐ **지급정지**(그 날 이후의 실업등급부를 지급 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 ☐ **반환명령**(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 ☐ **납부명령**(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을 전액 반환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의 2 배에 상당하는 액수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 부정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 이들 반환금 등의 납입을 게을리하면 재산의 차압 등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 ☐ 죄질이 나쁜 경우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4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헬로워크 등이 실시한 실업등급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심사청구'라 합니다.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헬로워크 등을 통해 또는 직접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그 뜻을 전하십시오. 또한 고용보험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서의 등본이 송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노동보험 심사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심사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3 개월이 경과해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정을 거치지 않고 노동보험심사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헬로워크 등이 실시한 실업등급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 소송은 심사청구의 결정을 거친 후에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 년이 경과한 경우를 제외)

단, 심사청구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3 개월이 경과해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없는 경우 등은 결정을 거치지 않고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5 교육훈련급부에 대하여

1 일반교육훈련과 관련한 교육훈련급부

일하는 사람의 주체적인 능력 개발을 지원하여 고용의 안정과 재취직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의 급부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1)(재직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분(이직자)이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을 받고 수료한 경우, 그 수강을 위해 수강자 본인이 교육훈련시설에 지불한 교육훈련 경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액수(상한 있음)가 지급됩니다.

※1 피보험자란, 일반 피보험자 및 고연령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이하, 이 항목에서 동일합니다.

지급 대상자

일반교육훈련과 관련한 교육훈련급부금의 지급 대상자는 다음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을 받고 해당 교육훈련을 수료한 분입니다.

- 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재직 중인 분)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교육훈련을 수강하기 시작한 날(이하, '수강 개시일'이라 함)에 지급요건기간(※2)이 3년 이상 될 것(※3)
- ②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분(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분)
수강 개시일 직전의 피보험자가 아니게 된 날이 수강 개시일 이전 1년 이내(적용대상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최대 20년 이내)(※4)이고, 수강 개시일의 지급요건 기간이 3년 이상 될 것(※3)

※2 지급요건기간이란, 수강 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의 적용 사업에 피보험자로서 고용된 기간을 말합니다. 자세한 것은 헬로워크의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처음으로 일반교육훈련과 관련한 교육훈련급부를 받는 분은 지급요건기간이 1년 이상 될 것(잠정적 조치)

※4 수강 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아닌 분 중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날 이후 1년간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인해 연속 30일 이상 대상 교육훈련의 수강을 개시하지 못한 날이 있는 경우는 헬로워크에 그 사실을 전함으로써,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수강 개시일까지의 교육훈련급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간(적용대상기간)에 그 수강을 개시하지 못한 일수(최대 19년)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대상 교육훈련을 받고 수료한 경우, 그 수강을 위해 수강자 본인이 교육훈련 실시자에게 지불한 교육훈련 경비의 20%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20%에 상당하는 액수가 1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액은 10만엔으로 하며, 4천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급부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강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캐리어 컨설턴트(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 30 조의 3 에 규정된 캐리어 컨설턴트)가 실시하는 캐리어 컨설팅을 받은 경우는 그 비용을 교육훈련 경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액수가 2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의 교육훈련 경비로 추가할 수 있는 액수는 2만엔까지입니다. (헤이세이 29년 1월 1일 이후에 캐리어 컨설팅을 수강한 경우에 한합니다)

2 특정일반교육훈련과 관련한 교육훈련급부

신속한 재취직 및 조기 캐리어 형성을 지원하여 고용의 안정과 재취직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의 급부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1)(재직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분(이직자)이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을 받고 수료한 경우, 그 수강을 위해 수강자 본인이 교육훈련시설에 지불한 교육훈련 경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액수(상한 있음)가 지급됩니다.

※1 피보험자란, 일반 피보험자 및 고연령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이하, 이 항목에서 동일합니다.

지급 대상자

특정일반교육훈련과 관련한 교육훈련급부금의 지급 대상자는 다음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을 받고 해당 교육훈련을 수료한 분입니다.

- 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재직 중인 분)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교육훈련을 수강하기 시작한 날(이하, '수강 개시일'이라 함)에 지급요건기간(※2)이 3년 이상 될 것(※3)
- ②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분(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분)
수강 개시일 직전의 피보험자가 아니게 된 날이 수강 개시일 이전 1년 이내(적용대상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최대 20년 이내)(※4)이고, 수강 개시일의 지급요건기간이 3년 이상 될 것(※3)

※2 지급요건기간이란, 수강 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의 적용 사업에 피보험자로서 고용된 기간을 말합니다. 자세한 것은 헬로워크의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처음으로 특정일반교육훈련과 관련한 교육훈련급부를 받는 분은 지급요건기간이 1년 이상 될 것(잠정적 조치)

※4 수강 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아닌 분 중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날 이후 1년간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인해 연속 30일 이상 대상 교육훈련의 수강을 개시하지 못한 날이 있는 경우는 헬로워크에 그 사실을 전함으로써,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수강 개시일까지의 교육훈련급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간(적용대상기간)에 그 수강을 개시하지 못한 일수(최대 19년)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대상 교육훈련을 받고 수료한 경우, 그 수강을 위해 수강자 본인이 교육훈련 실시자에게 지불한 교육훈련 경비의 40%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40%에 상당하는 액수가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액은 20만엔으로 하며, 4천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급부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전문실천교육훈련과 관련한 교육훈련급부

일하는 사람의 주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캐리어 형성을 지원하여 고용의 안정과 재취직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의 급부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1)(재직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분(이직자)이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전문실천교육훈련을 수강하고 수료한 경우, 본인이 교육훈련시설에 지불한 교육훈련 경비의 일정 비율액(상한 있음)을 헬로워크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해당 급부를 받고 있는 분은 훈련을 받고 있는 기간 중 실업상태인 날에 대해 기본수당 일액에 상당하는 액수의 80%(※2)의 교육훈련지원급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피보험자란, 일반 피보험자 및 고연령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이하, 이 항목에서 동일합니다.

※2 헤이세이 29 년 12 월 31 일 이전에 수강하기 시작한 전문실천교육훈련의 교육훈련지원급부금의 지급액은 기본수당 일액에 상당하는 액수의 50%입니다.

지급 대상자

전문실천교육훈련과 관련한 교육훈련급부금의 지급 대상자는 다음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을 받고 해당 교육훈련을 수료한 분입니다.

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전문실천교육훈련을 수강하기 시작한 날(이하, '수강 개시일'이라 함)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분 중 지급요건기간(※3)이 3 년 이상(※4) 될 것

②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분

수강 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아닌 분 중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직일 다음날) 이후 수강 개시일까지가 1 년 이내(적용대상기간이 연장(※5)된 경우는 최대 20 년 이내)이면서 지급요건기간이 3 년 이상(※4) 되는 분

※3 지급요건기간이란, 수강 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의 적용 사업에 피보험자로서 고용된 기간을 말합니다. 자세한 것은 헬로워크의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처음으로 전문실천교육훈련과 관련한 교육훈련급부를 받는 분은 지급요건기간이 2 년 이상 될 것(잠정적 조치)

※4 수강 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아닌 분 중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날 이후 1 년간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인해 연속 30 일 이상 대상 교육훈련의 수강을 개시하지 못한 날이 있는 경우는 헬로워크에 그 사실을 전함으로써,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수강 개시일까지의 교육훈련급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간(적용대상기간)에 그 수강을 개시하지 못한 일수(최대 19 년)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전문실천교육훈련 수강 중	전문실천교육훈련 수료 후
지급액 (수강자가 지불한 교육 훈련 경비×오른쪽 란의 비율)	50% 단, 4 천엔을 초과하는 경우. 120 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120 만엔	자격 취득 등을 하였고 또한 수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1 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고용된 경우 70% 단, 4 천엔을 초과하는 경우. 168 만엔을 초과하는 경우:168 만엔 이미 지급한 왼쪽 란의 액수와의 차액 이 추가 지급됩니다.

※ 전문실천교육훈련을 수강하는 중에 지급되는 급부금의 상한액 120 만엔은 훈련기간이 3 년간인 전문실천교육훈련을 수강한 경우의 상한액입니다. 훈련기간이 1 년인 경우는 40 만엔, 2 년인 경우는 80 만엔이 상한액입니다.

또한 전문실천교육훈련을 수료한 후 지급되는 급부금 168 만엔에 대해서도 훈련기간이 3 년인 전문실천교육훈련을 수강한 경우의 상한액이 됩니다. 훈련기간이 1 년인 경우는 56 만엔, 2 년인 경우는 112 만엔이 상한액입니다.

※ 10 년 동안 여러번 전문실천교육훈련을 수강한 경우, 처음으로 전문실천교육훈련의 교육훈련급부금을 수급한 전문실천교육훈련의 수강 개시일(헤이세이29년 12월 31 일 이전의 수강 개시일 포함)을 기점으로 10 년이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수강을 개시한 전문실천교육훈련의 교육훈련급부금 합계액은 168 만엔이 한도입니다.

또한 법령상 최단 4 년의 전문실천교육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분은 3 년째 수강을 수료할 때 전문실천교육훈련급부의 10 년간의 지급 상한액 168 만엔에 4 년째 수강 상당분으로서 상한 56 만엔이 추가됩니다. (4 년간 최대 224 만엔)

※ 헤이세이 29 년 12 월 31 일 이전에 수강을 개시한 전문실천교육훈련의 지급액은 교육훈련 경비의 40%(자격 취득 등을 하였고 또한 수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1 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고용된 경우 60%)입니다. 또한 지급 상한액은 연간 32 만엔 (자격 취득 등을 하였고 또한 수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1 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고용된 경우는 연간 48 만엔)입니다.

4 교육훈련급부의 지정 강좌와 지급요건 조회에 대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에는 어떤 것이 있나?

‘후생노동대신 지정 교육훈련강좌 리스트’를 통해 헬로워크의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도 ‘후생노동대신 지정 교육훈련강좌 검색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yufu.mhlw.go.jp/kensaku/>)

교육훈련급부금의 지급 신청에 앞서,

①수강 개시(예정)일 시점에 교육훈련급부금의 수급 자격을 충족하고 있는가

②수강을 희망하는 교육훈련강좌가 후생노동대신의 지정을 받았는가

에 대하여 ‘교육훈련급부금 지급요건 조회표’를 통해 여러분의 주소를 관할하는 헬로워크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헬로워크의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6 고용계속급부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급부 중에는 재직 중에 지급되는 '고용계속급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재취직 한 후에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간단히 소개합니다. 또한 고용계속급부의 지급 신청 등의 수속은 재취직 한 곳의 사업주를 경유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이 '고용계속급부'에는 '고연령 고용계속급부', '육아휴업급부' 및 '개호휴업급부'가 있습니다.

고연령 고용계속급부에 대하여

고연령 고용계속급부는 65 세까지의 고용계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 세 이상 65 세 미만(선원인 분은 생년월일에 따라 55 세 이상 60 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분(재직 중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고연령 고용계속급부에는 고연령 고용계속기본급부금과 고연령재취직급부금 2 종류가 있습니다.

1 고연령 고용계속기본급부금

고용보험의 기본수당 등(재취직수당 등의 기본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급부를 포함)을 지급 받지 않은 분이 지급대상이 되는 급부금입니다.

지급요건

- ☐ 60 세 이상 65 세 미만의 피보험자일 것
- ☐ 피보험자였던 기간이 통산 5 년 이상 될 것
 - ※ 이 '피보험자였던 기간'의 계산에서, 피보험자였던 기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백 기간이 1 년 이내인 경우 전후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을 통산하게 됩니다.
 - 단, 기본수당 등 또는 특례일시금을 지급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그 후의 기간밖에 통산할 수 없습니다.
- ☐ 60 세 이후 매달 지불된 임금액이 60 세 도달 시 임금 월액의 75% 미만으로 낮아졌을 것
- ☐ 60 세 이후 매달 지불된 임금액이 지급 한도액(365,114 엔 매년 8 월 1 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만일 것
- ☐ 달력상 매달 1 일부터 말일까지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되어 있을 것
- ☐ 달력상 매달 육아휴업급부 또는 개호휴업급부를 지급 받을 수 없을 것

지급되는 금액

매달 지불된 임금의 '저하율'(%)(매달 지불된 임금액 ÷ 60 세 도달 시의 임금 월액 × 100)에 따라 다음 계산식을 통해 산정합니다. (단, 지급 한도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저하율이 61% 이하인 경우
지급액 = 매달 지불된 임금액 × 15%
- ☐ 저하율이 61% 초과 75% 미만인 경우
지급액 = 매달 지불된 임금액 × 15%~0%(저하율에 따라 일정 비율로 체감됩니다)
- ☐ 저하율이 75% 이상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65 세에 도달하는 달까지입니다.

2 고연령재취직급부금

수급자격에 기초한 기본수당을 지급 받은 후, 60 세 도달 이후에 1 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함으로써 피보험자로 고용된 분에 대한 급부금입니다. 기본수당의 수급기간 내에 취직하였고 취직일 전날의 기본수당 지급잔일수가 100 일 이상 되는 분이 대상입니다.

지급요건

- ☐ 60 세 이상 65 세 미만의 피보험자일 것
- ☐ 피보험자였던 기간이 통산 5 년 이상 될 것
 - ※ 이 ‘피보험자였던 기간’의 계산에서, 피보험자였던 기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백 기간이 1 년 이내인 경우 전후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을 통산하게 됩니다.
 - 단, 기본수당 등 또는 특례일시금을 지급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그 후의 기간밖에 통산할 수 없습니다.
- ☐ 취직일 전날에 기본수당의 지급잔일수가 100 일 이상 될 것
- ☐ 재취직 후의 임금 월액이 기본수당의 산정의 기초가 된 임금 일액의 30 일분의 액수의 75% 미만으로 낮아졌을 것
- ☐ 재취직 후 매달 지불된 임금액이 지급 한도액(365,114 엔 매년 8 월 1 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만일 것
- ☐ 달력상 매달 1 일부터 말일까지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되어 있을 것
- ☐ 달력상 매달 육아휴업급부 또는 개호휴업급부를 지급 받을 수 없을 것

지급액

기본적인 방침은 고연령 고용계속기본급부금과 동일합니다. 단, ‘저하율’은 60 세 도달 시의 임금이 아니라 기본수당의 기준이 된 임금에 비해 재취직 후의 임금이 낮아졌는지 여부로 계산합니다. 또한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기본수당의 지급잔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 취직일 전날의 기본수당의 지급잔일수가 200 일 이상인 경우: 재취직 후 2 년간
- ☐ 취직일 전날의 기본수당의 지급잔일수가 100 일 이상인 경우: 재취직 후 1 년간

※ 그 기간 내에 65 세에 도달한 경우는 65 세에 도달한 달까지입니다.

※ 고연령재취직급부금과 재취직수당은 함께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계속급부의 실제 급부액은 ‘간주 임금액’이나 ‘지급 한도액’의 관계로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헬로워크의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업급부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남녀를 불문합니다)가 육아휴업을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업급부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것은 헬로워크의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란, 일반 피보험자 및 고연령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개호휴업급부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그 가족을 개호하기 위해 개호휴업을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호휴업급부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것은 헬로워크의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란, 일반 피보험자 및 고연령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37 고용보험과 노령후생연금 등의 동시 지급 조정에 대하여

구직자급부(기본수당)와 노령후생연금 및 퇴직공제연금의 동시 지급을 조정합니다. 수급권이 발생하는 노령후생연금 등의 수급권자가 구직자급부(기본수당)를 지급 받는 동안은 노령후생연금 및 퇴직공제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것은 구직자급부의 지급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직자급부 외에 고연령고용계속급부도 동시 지급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동시 지급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소속하였거나 또는 소속 예정인 연금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8 국민건강보험료(세)의 경감에 대하여

도산, 해고 등으로 인한 이직(특정수급자격자)이나 고용 해지 등으로 인한 이직(특정이유이직자)을 한 분의 국민건강보험료(세)가 경감됩니다.

대상자

이직일 다음날부터 다음 연도말까지의 기간에,

- 1 고용보험의 특정수급자격자(예: 도산, 해고 등으로 인한 이직)
- 2 고용보험의 특정이유자격자(예: 고용 해지 등으로 인한 이직)

로서 구직자급부(기본수당 등)를 받는 분입니다.

※고용보험수급자격자증의 이직이유가 11, 12, 21, 22, 31, 32, 23, 33, 34 에 해당하는 분

※고연령수급자격자 및 특례수급자격자인 분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감액

국민건강보험료(세)는 전년 소득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경감은 전년의 급여소득을 그 $\frac{30}{100}$ 으로 간주하여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경감액 등은 시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감 기간

이직일 다음날부터 다음 연도말까지의 기간입니다.

※고용보험의 구직자급부(기본수당 등)를 받는 기간과는 다릅니다.

※신고가 늦어져도 소급하여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동안은 도중에 취직해도 계속하여 대상이 되지만,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면 종료됩니다.

경감을 받으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제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거주하는 시정촌의 국민건강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주요 수속 리스트

수속이 필요할 때	수속의 기한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및 증명서	해당 페이지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친족의 간호 등으로 수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기간이 30일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 이후 조기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장 후 수급기간의 마지막날까지의 기간중이면 가능	수급기간연장신청서, 수급자격자증	모자수첩, 진단서 등	17페이지
취직 또는 사업의 개시가 결정되었을 때	원칙적으로 취직일 전날	고용(채용 연월일)증명서, 수급자격자증	취직처 사업주	20페이지
조기에 재취직하였을 때	취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	재취직수당지급신청서, 수급자격자증	취직처 사업주	20페이지
장애인 등인 분이 헬로워크의 소개로 취직하였을 때	취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	상용취직준비수당지급신청서, 수급자격자증	취직처 사업주	25페이지
성명, 주소 등을 변경하였을 때	다음 인정일까지(다른 헬로워크 등의 관할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사전에)	수급자격자성명·주소변경신고서, 수급자격자증	주민표 등	30페이지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15일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질병, 부상이 나은 직후의 인정일까지(장기상병인 경우는 헬로워크 등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지급신청서, 수급자격자증	진료 담당 의사	30페이지
사망한 수급자를 대신해 유족 분께서 실업등급부를 수급하고자 할 때	사망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미지급실업등급부청구서, 수급자격자증	사망진단서, 세대 전부의 주민표, 호적등본 등	31페이지

面 接 証 明 書

住 所

氏 名

上記の者について、以下のとおり、当社の採用試験（面接）を行いました。

採用試験(面接) 実 施 日 時	年	月	日	時	分	から
	年	月	日	時	分	まで

上記のとおり相違ないことを証明します。

年 月 日

公共職業安定所長 殿

所在地

名 称

事業所

代表者名

印

電話番号

採用証明書

別紙 1

本人記入欄

支給番号		
フリガナ 氏 名	生年月日	年 月 日
(〒)		
住所		(電話 ())

この採用証明書は、正しい雇用年月日を把握し、適正な給付を行うため、事業主の皆様
様に証明していただくものです。必ず出勤簿、タイムカード、労働者名簿等の関係書類
を確認の上、証明してください。

万一、雇用年月日を事実と相違して記載し、それが不正受給につながる場合は、雇用
保険法第 10 条の 4 第 2 項により失業等給付を受けた者と連帯して返還及び納付してい
ただく場合があります。

事業主記入欄

雇用（予定）年月日 （試用期間を含む。）	年 月 日	雇用の内定日	年 月 日
雇用（予定）年月日以前に臨時、アルバイ ト、日雇い等で働いた期間の有無（該当す る箇所を○で囲んでください。） ※裏面「雇用年月日」についての注意事 項」を必ずご参照ください。	ア 無し イ 有り（具体的な就労期間を記入し てください。） 年 月 日 ～ 年 月 日 (日間)		
職 種			
今回採用された方の採用経路について、以下の項目の該当する箇所を○で囲んでく ださい。 ア 安定所の紹介（関連機関含む） ウ 求人広告、新聞折り込み等 イ 職業紹介事業者の紹介 エ 知人、取引先等の紹介			
上記のとおり相違ないことを証明します。 公共職業安定所長 殿 年 月 日 事業所 所在地 名 称 代表者名 電 話 適用事業所番号			
印			

ハローワークでは、各種技能を持たれた方々が多数仕事を探されています。

- 1 今後の採用予定
☐ ある ☐ ない
- 2 現在、ハローワークに求人を
出していただいていますか？
☐ 出している ☐ 出していない

職種	採用予定人数	採用の時期
		月頃
		月頃

「雇用年月日」についての注意事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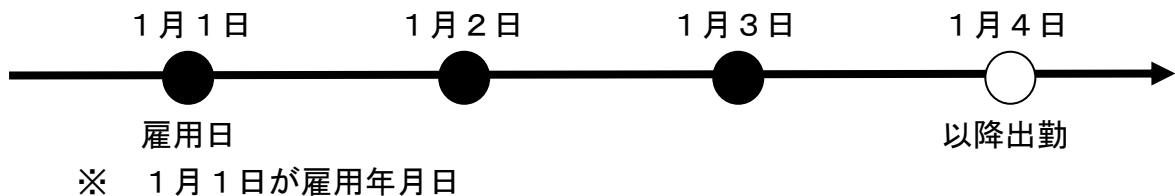
- ① まず、社員や従業員として、いつから在籍されているかを確認してください。「雇用年月日」は、本人との間で取り決めをされた

「在籍となる初日」のことをいいます。

通常は、「最初に出勤される予定の日」や「実際に出勤された日」となりますが、「在籍となる初日」と最初に出勤される日が異なる場合があるので、ご注意ください。

(例1) 雇用年月日が休祝日に当たる場合

●日は会社休業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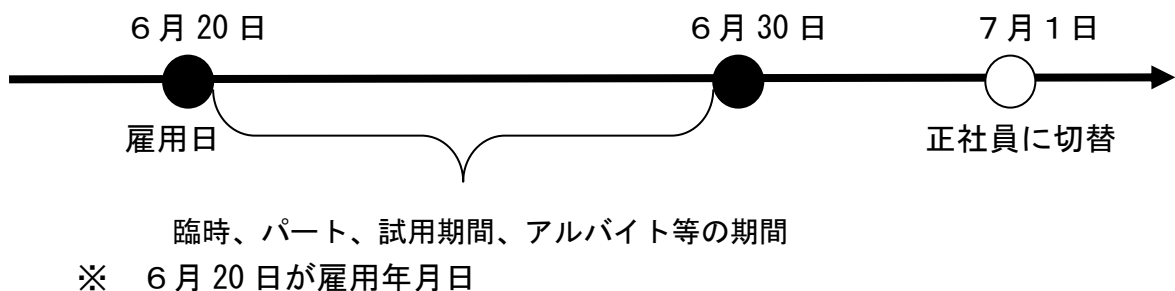


(例2) 出勤すべき初日に欠勤された場合



- ② 「在籍となる初日」には、正社員や本採用に限らず、臨時やパート、見習い、試用、研修等で在籍している期間も含みます。

(例3) 正社員に切替前に、臨時・パート・試用期間・アルバイト等がある場合



		-							-	
--	--	---	--	--	--	--	--	--	---	--

氏 名

生年月日 年 月 日生

傷病等の状態 及びその程度	
傷病等のため職 業に就くことができ なかったと認めら れる期間	年 月 日 から 年 月 日 まで 日間

上記のとおり証明します。

年 月 日

公共職業安定所長 殿

所在地

医師又は

診療担当者名

印

離 職 状 況 証 明 書

(雇用保険未加入者用)

申請者が記入	フリガナ		生年月日	昭和			
	氏 名			年	月	日	
	住 所	〒 ー Tel () ー					

事業主が記入してください。	雇用年月日	令和 年 月 日	離職年月日	令和 年 月 日
	離職理由 …… 該当するものを○で囲み、具体的な事情を記載してください。			
	イ 解雇 ロ 倒産による退職 ハ 契約期間満了	具体的な事情		
	ニ 事業主の勧奨による退職 ホ 定年(歳)			
	ヘ 定年(歳)後の勤務延長又は再雇用の終了(歳)			
ト その他				
上記のとおり相違ないことを証明します。 令和 年 月 日 公共職業安定所長 殿 事業所の所在地及び名称 事業主氏名 _____ (印)				

※ 事業主の方へお願い

- 1 この証明は、貴事業所で雇入れた方のうち、雇用保険被保険者として資格取得をされなかった方についてご記入ください。
- 2 雇入年月日・離職年月日については、試用期間・研修期間等があった場合には、その期間を含めてご記入ください。
- 3 雇用保険に加入いただいている場合は、離職票Ⅰ・Ⅱをご使用ください。

【安定所記載欄】

令和2年（2020年）

曜日型 週型		日	月	火	水	木	金	土	曜日型 週型		日	月	火	水	木	金	土	曜日型 週型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4				1	2	3	4	5	1						1	2	9	3			1	2	3	4	5
	1	5	6	7	8	9	10	11		2	3	4	5	6	7	8	9		4	6	7	8	9	10	11	12
	2	12	13	14	15	16	17	18		3	10	11	12	13	14	15	16		1	13	14	15	16	17	18	19
	3	19	20	21	22	23	24	25		4	17	18	19	20	21	22	23		2	20	21	22	23	24	25	26
	4	26	27	28	29	30	31			1	24	25	26	27	28	29	30		3	27	28	29	30			
2	4							1	6	2		1	2	3	4	5	6	10	3					1	2	3
	1	2	3	4	5	6	7	8		3	7	8	9	10	11	12	13		4	4	5	6	7	8	9	10
	2	9	10	11	12	13	14	15		4	14	15	16	17	18	19	20		1	11	12	13	14	15	16	17
	3	16	17	18	19	20	21	22		1	21	22	23	24	25	26	27		2	18	19	20	21	22	23	24
	4	23	24	25	26	27	28	29		2	28	29	30						3	25	26	27	28	29	30	31
3	1	1	2	3	4	5	6	7	7	2				1	2	3	4	11	4	1	2	3	4	5	6	7
	2	8	9	10	11	12	13	14		3	5	6	7	8	9	10	11		1	8	9	10	11	12	13	14
	3	15	16	17	18	19	20	21		4	12	13	14	15	16	17	18		2	15	16	17	18	19	20	21
	4	22	23	24	25	26	27	28		1	19	20	21	22	23	24	25		3	22	23	24	25	26	27	28
	1	29	30	31						2	26	27	28	29	30	31			4	29	30					
4	1				1	2	3	4	8	2							1	12	4			1	2	3	4	5
	2	5	6	7	8	9	10	11		3	2	3	4	5	6	7	8		1	6	7	8	9	10	11	12
	3	12	13	14	15	16	17	18		4	9	10	11	12	13	14	15		2	13	14	15	16	17	18	19
	4	19	20	21	22	23	24	25		1	16	17	18	19	20	21	22		3	20	21	22	23	24	25	26
	1	26	27	28	29	30				2	23	24	25	26	27	28	29		4	27	28	29	30	31		
										3	30	31														

※ 春分の日、秋分の日は未定

令和3年（2021年）

曜日型		日 月 火 水 木 金 土							曜日型		日 月 火 水 木 金 土							曜日型		日 月 火 水 木 金 土											
週型									週型									週型													
1	4	1 2							5	1	1							9	3	1 2 3 4											
	1	3	4	5	6	7	8	9		2	2	3	4	5	6	7	8		4	5	6	7	8	9	10	11					
	2	10	11	12	13	14	15	16		3	9	10	11	12	13	14	15		1	12	13	14	15	16	17	18					
	3	17	18	19	20	21	22	23		4	16	17	18	19	20	21	22		2	19	20	21	22	23	24	25					
	4	24	25	26	27	28	29	30		1	23	24	25	26	27	28	29		3	26	27	28	29	30							
1	31								2	30	31																				
2	1	1 2 3 4 5 6							6	2	1 2 3 4 5							10	3	1 2											
	2	7	8	9	10	11	12	13		3	6	7	8	9	10	11	12		4	3	4	5	6	7	8	9					
	3	14	15	16	17	18	19	20		4	13	14	15	16	17	18	19		1	10	11	12	13	14	15	16					
	4	21	22	23	24	25	26	27		1	20	21	22	23	24	25	26		2	17	18	19	20	21	22	23					
	1	28								2	27	28	29	30								3	24	25	26	27	28	29	30		
																		4	31												
3	1	1 2 3 4 5 6							7	2	1 2 3							11	4	1 2 3 4 5 6											
	2	7	8	9	10	11	12	13		3	4	5	6	7	8	9	10		1	7	8	9	10	11	12	13					
	3	14	15	16	17	18	19	20		4	11	12	13	14	15	16	17		2	14	15	16	17	18	19	20					
	4	21	22	23	24	25	26	27		1	18	19	20	21	22	23	24		3	21	22	23	24	25	26	27					
	1	28	29	30	31								2	25	26	27	28		29	30	31	4	28	29	30						
4	1	1 2 3							8	3	1 2 3 4 5 6 7							12	4	1 2 3 4											
	2	4	5	6	7	8	9	10		4	8	9	10	11	12	13	14		1	5	6	7	8	9	10	11					
	3	11	12	13	14	15	16	17		1	15	16	17	18	19	20	21		2	12	13	14	15	16	17	18					
	4	18	19	20	21	22	23	24		2	22	23	24	25	26	27	28		3	19	20	21	22	23	24	25					
	1	25	26	27	28	29	30								3	29	30		31								4	26	27	28	29

※ 春分の日、秋分の日は未定

문의처 일람

집에서 가까운 헬로워크는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mhlw.go.jp/content/000637894.pdf>



통역사가 있는 헬로워크는 아래를 참조

<https://www.mhlw.go.jp/content/000592865.pdf>



노동 조건에 대해 상담하고 싶을 때

https://www.check-roudou.mhlw.go.jp/soudan/foreigner_eng.html

